



한국YWCA  
성평등운동



# 목 차

I. 한국YWCA 성평등운동 .....	2
1. 성평등운동 정책 .....	3
2. 운동 현장 .....	9
3. 지역 이슈와 현장 .....	17
※ 한국YWCA가 걸어온 길 .....	27
II. 성평등운동 : 주요 이슈 .....	33
1. 성평등 문화 .....	33
2. 여성 대표성 .....	36
3. 여성의 경제활동 .....	50
4. 여성과 폭력 .....	66
III. 성평등운동 사전 .....	69

## 자료집을 펴내며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가 전개하고 있는 ‘성평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선거와 정책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리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주제로 벌이는 YWCA 성평등운동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여성을 둘러싼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10만 회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2015년 전국 중점운동으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는 성평등운동은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로 시작된 초창기 활동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YWCA의 선각자들은 “청년여자로 야소기독을 신앙케하여 생활의 원만과 인격의 개발”을 목적으로 ‘여성교육 기회 확대’, ‘결혼 생활에서의 여성의 권리 인정’, ‘여성들의 자유로운 옷차림’, ‘여성들의 교사, 교회 직분 수행’, ‘경제적 참여 등 사회적인 발전’ 등 지금보다 훨씬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습니다.

2019년, 오늘, ‘우리 모두’가 100여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이유는 기독교여성주의운동단체로 교회 내 여성 활동과 달리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 신앙 실천 행동을 주도 해온 YWCA의 독자성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천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YWCA 만의 운동방식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문에 담긴 정의와 평화가 현실이 아닌 비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회원Y별로 또는 5개 지역위원회와 연합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성평등운동 현장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4개 주제별 현황과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였고, 다소 익숙하지 않아 추가 설명이 필요한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 쓴 ‘성평등운동 사전’도 정리하였습니다. 성평등운동이 지역운동이자 회원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성평등’에 기여하는 운동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평등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 I. 한국YWCA 성평등운동

1. 성평등운동 정책
2. 운동 현장
3. 지역의 이슈와 현장

※ 한국YWCA가 걸어 온 길

“

성차별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과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에게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

## 1. 성평등운동 정책

한국YWCA 성평등운동은 전국 52개 회원YWCA가 참여하는 전국 중점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운동의 목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 이슈 ISSUES 2016-2017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의 리더십 개발과 참여 확대  
지역사회 성인지 거버넌스 구축  
여성폭력 예방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이슈 ISSUES 2018-2019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선거와 정책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한국YWCA 성평등운동은 정기총회는 물론 정책협의회, 통합실무 정책협의회 등 회원 모두의 목소리와 바람을 담을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주요 내용과 운동 방식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 2. 연합회 정기총회를 통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 이라는 주제로 2016~2017 한국YWCA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돌봄정의운동을 5대과제로 선정하였고, 특히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을 전국중점운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sup>1)</sup>

본 결정은 2015. 9. ‘한국YWCA 대표들이 YWCA의 목적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여 한국YWCA의 역할과 과제를 찾고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된 ‘2015년도 (사)한국YWCA 연합회 정책협의회’의 논의를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 2017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p.32.

---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YWCA 운동의 지향을 표현하고, 회원YWCA의 제안에 따라 6대 운동과제를 5대 과제로 통합하여 집중화하여 중점운동과 지속운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정책실행주기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변화를 위한 대시민운동을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에 중점을 두고 전개함. 탈핵생명운동은 2014-2015년도 YWCA 중점운동의 성과를 이어 지속하고,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 성평등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전개함. 돌봄운동, 청년운동, 평화운동 영역에서 여성주의관점이 기본적인 관점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운동으로 전개함 (5대 운동 영역).<sup>2)</sup>

---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은 교회 내의 여성 활동과 대조적으로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 일해 온 한국YWCA 운동의 독자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개혁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sup>3)</sup>, 그리고 현재 YWCA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정책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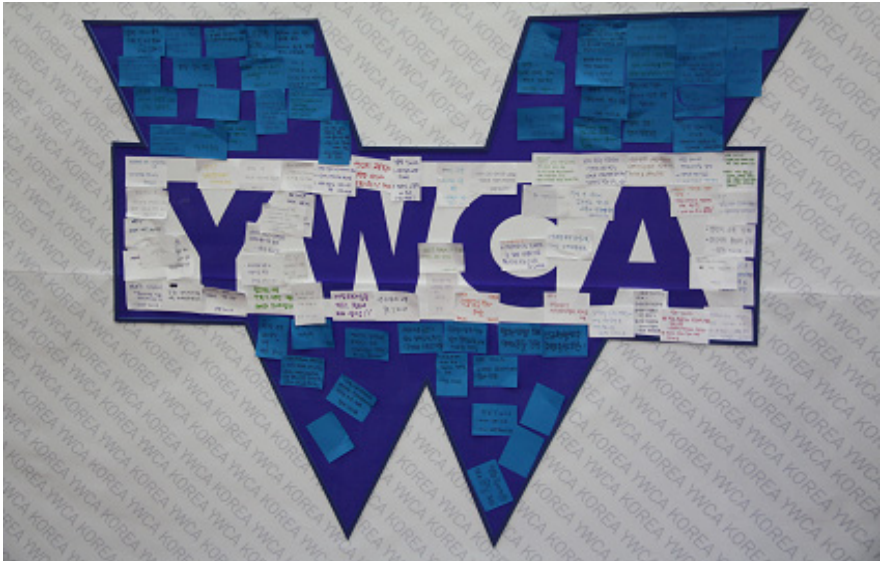
2) (사)한국YWCA연합회. 2015년도 (사)한국YWCA연합회정책협의회. 자료집 2015-36. p.31.

3) 유성희, 한국YWCA 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 정체성·조직·리더십을 중심으로. 2013. 8.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7-8쪽.

---

2014~2015 정책과제인 성인지 정책 정착과 여성폭력예방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한 사회’이므로 YWCA정책 과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7대 영역<sup>4)</sup>과 연계하여 YWCA 집중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 포함된 성주류화 정책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성평등문화 확산 포함) 과제의 방향과 이행을 점검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YWCA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사업, 성폭력예방 교육,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확대 등 회원 YWCA 성평등 관련 활동들을 포함하는 정책과제가 필요함.

---



- 4)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인권보장,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폐회 의식에서 2016-2017 한국Y 운동 선포. 2016-2017 중점운동 ‘탈핵’ ‘성평등’ 현수막 입장. 행진 퍼포먼스 ; 탈핵과 성평등 세상을 향한 소망과 결단의 마음으로 무대 앞으로 나와, ‘회원Y 운동 과제’ (각 회원별 총 2개 ; 탈핵 1개, 성평등 1개)를 현수막의 한국YWCA 로고

모양에 붙입니다.

2016. 9.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전국중점운동인 성평등운동의 통합적 기획, 2017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운동방향 공유, 개별 회원 YWCA 내 운동 목표 공유와 통합적 실행 증진 (본부 내 부서간, 본부와 시설 간 역할분담, 협력 강화), YWCA 실무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통합실무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YWCA 사무총장 42명, 총괄실무책임자와 성평등운동 담당실무자 60명,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 등 총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위원회의 전문적 발제와 회원YWCA 현장의 목소리를 연계하여 YWCA가 펼치고 있는 각 영역의 운동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한국YWCA 내부로부터 성인지 관점을 공유하고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 2. 운동 현장

[2016]

2016. 3. 총선 대응 YWCA여성의제를 개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에 송부하고, 정당의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 성평등 사회를 위해 노동, 여성·아동폭력, 성인지제도, 정치참여, 기후변화와 재난, 평화와 통일 등 영역에서 25개 과제 제안.

2016. 5.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워크숍 (한국 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과 고용평등주간을 기념하여 14개 회원YWCA(거제, 마산, 목포, 대구, 대전, 서울, 여수, 인천, 전주, 진주, 제천, 청주, 창원, 춘천) 본부 단독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거리캠페인 전개. 9월에는 대구YWCA, 서울YWCA, 여수YWCA, 창원YWCA의 참여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을 갖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와 제도 개선 과제 제안.



2016. 6, 9, 11. 역량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한 여성폭력 관련 YWCA시설장 네트워크 (25개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10개 성폭력상담소와 쉼터, 2개 성매매피해상담과 지원센터, 3개 여성인권상담과 지원센터 등 총 40개 가정폭력·여성폭력·여성인권·성매매 관련 시설) 운영. 시설과 지역에 따른 특수성 안에서 YWCA 소속 시설로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운동방향 설정과 공유, 현안 해결과 지역 간 연대 방안 구축.

2016. 10. 기후변화와 여성 원탁회의를 개최, 2015 파리기후변화회의 시 논의된 ‘기후변화와 젠더’ 현안을 논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자체가 세계 흐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 성인지적 관점의 재난 대응, 다음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

2016. 10. 15개 광역시도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기반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분석과 제안 활동 전개.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안양, 창원YWCA가 참여하여 광역시·도 재난 대응 매뉴얼과 양성평등기본계획, 조례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검토를 통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제안 활동 전개.

## [2017]

2017. 4. 제19대 대통령 선거 한국YWCA 정책요구서 제출. 전국 10만 회원을 대표하는 52개 회원YWCA의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청년대표 5천 여 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YWCA정책과 3개(탈핵, 성평등, 청년) 분야 6개의 핵심공약의 실행을 촉구하는 연명서를 포함하여 총 600쪽에 달하는 한국YWCA정책요구서

를 각 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 서울, 부산, 광주, 청주, 안양YWCA 참여로 제19대 대선 대응 TF팀을 구성, 성평등을 비롯한 한국YWCA의 주요 운동 분야의 핵심 의제를 준비. 참여한 시범YWCA 별로 10인의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제안된 과제를 전국 회원YWCA와 공유·확산을 위한 유권자시민운동 전개.



2017. 5. 동일임금의 날을 전후로 워크숍 (“남녀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과 32개 회원Y 본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고용평등주간 (2017. 5. 22-2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관한 대중인식 제고 캠페인.

2017. 여성폭력 관련 YWCA 시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과 지역과 시설 간 연대활동을 위하여 1분기 여성폭력예방 운동 방향 설정, 2분기 19대 대선 관련 YWCA정책 제안 활동으로 ‘여성폭력 근절과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 의제에 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여성

폭력 방지법 마련을 촉구, 3분기 페미니즘 대통령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젠더폭력기본법’의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법 제정 촉구, 4분기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촉구

2017. 2. 3. 5. 경주 포항 지진(2016년 9월)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인지적 재난 매뉴얼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YWCA는 3차례의 광역 시도 성인지적 재난대응 YWCA 정책회의와 서울시 사례 연구모임 개최. 광역 시도 재난 대응 매뉴얼 부재 등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년)의 재난과 안전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과제가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에 활용함.

2017. 12. 고양, 광명, 광주, 남양주, 논산, 대전, 부천, 서울, 성남, 인천, 의정부, 전주, 제천, 수원, 청주, 파주, 하남Y 등 총 17개 회원YWCA의 참여로 국민주권과 기본권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성평등헌법 YWCA 토론회 개최. 30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단체로 참여하여 남녀동등한 정치참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을 통해 남녀 모두를 위한 헌법이 되도록 새로운 헌법의 초안 작성에 노력을 기울임.

[2018]

2018. 3. 창립 초기부터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권익을 위해 힘써 온 한국YWCA는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선언’을 통해 ‘미투운동’에 용기 있게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며,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

을 다짐

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적인 성폭력 사건 전담기구 설립으로 성차별 구조 개선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 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 ‘3·8 여성의 날’을 맞아 명동을 비롯 전국적인 차원의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과 행진을 벌이고, 미투운동 확산을 위한 연대 활동을 통해 대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독교여성단체와 함께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선언,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 6차례에 걸친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에 함께 함.



2018. 4.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을 목표로 구성된 범여성계 연대활동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에 참여, 대통령 개헌안에서 빠진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 300인 선언’ 기자회견과 100만 유권자 서명운동 전개.



2018.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Y의 자원 활동가 및 실무활동가의 성평등 감수성 고취 및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진행. 1차 상반기 교육에서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등에서 5개 지역위원회별로 ‘YWCA 성평등운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과 기독교여성주의, YWCA 성평등운동 과제를 논하였으며, YWCA 성평등운동의 추진 내용과 현안을 공유하고 2018~2019 성평등운동 정책의 실천 계획을 수립. 회원YWCA의 심화교육 요청에 따라 하반기 2차 교육을 북부, 경기지역과 중부, 서부, 동부지역의 서울과 대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 ‘YWCA는 지역에서 어떤 성평등운동을 하려고 하는가?’를 주제로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성평등 담당 위원, 담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운동의 지역 확산과 회원YWCA 성평등운동 과제 설정을 위한 워크숍 진행.

2018.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남녀동일임금 운동과 페이미투 캠페인 전개. ‘임금차별은 불법이다’를 주제로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청년여성과 여성노동자, 취업지원기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관련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논의한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와 28개 회원Y의 참여로 고용평등주간 ‘페이미투



(PayMeToo)운동 전개.



2018. 3~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YWCA의 지향 가치가 지역 정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와 생활에 반영되도록 내외 부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지방선거 대응 TF’를 구성, 탈핵과 성평등, 청년 관련 YWCA의제를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제안. 출마 후보들에게 전달하거나 후보자 초청 협약 체결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투표 독려와 의제를 알리는 거리캠페인, 서명운동 등도 벌이며 유권자 자가평가, 후보자 평가 진행.

2018. 가정폭력·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 가해자 교정교육과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활동을 전개하는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 간의 2월, 5월, 10월 총 3차례 연대 모임과, 여성폭력 관련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중견활동가 대상 2박3일 제주 심프로그램 추진.

2019 계획

- 첫째, 정책제안 및 긴급사항 대처 및 연대
- 둘째, 2020년 총선의제 개발 및 지역여성 의제 개발
- 셋째,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 넷째, 여성폭력 관련 인권교육

2016~2017 1기 성평등운동은 사회적 영향력의 극대화, Y내부의 운동확산을 고려하여 지역운동과 회원운동이 강화되는 2018~2019 2기 중점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YWCA 정체성에 기반 한 운동으로 특화하되, 모든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정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정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이 주체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정책 실행의 결과가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YWCA 정체성에 기반하여  
모든 운동을 성인지적 감수성으로 기획, 실행하며  
여성이 주체가 된다*

”

### 3. 지역의 이슈와 현장

#### 경기

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12개 YWCA)

- 지방선거 평등정책 제안, 유권자캠페인, 정책 협약식
- 미투운동 선언, 여성차별철폐 퍼포먼스, 성평등교육 실시
- 여성의원 당선자 간담회와 논평, 방청모니터링, 시의원 성인지  
의식조사, 성평등정책 공약이행촉구 기자회견, 여성정치인 선거  
운동과정 모니터링과 평가회
- 핵심지도력 대상 성인지교육,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  
정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여성인권관련 부속기관  
성평등교육, 강사양성, 캠페인, 상담, 피해자 지원
- 지역 내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성인지 예·결산 및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성차별과 여성폭력에 대한 남성들의 지지와 참여를  
위한 히포쉬캠페인과 서명운동, 성인지 관점의 시의회  
방청 모니터링, 행정감사모니터링, 몰카사건 처리 관련 경찰서  
항의방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 성평등교육네트워크,  
여성인권영화제 등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축 노력

## 동부

거제, 경주, 김해, 대구, 마산, 부산, 사천, 안동, 양산, 울산,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포항 (15개 YWCA)

- 유아 및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인형극
- 마술로 풀어보는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 청소년 대상  
'청소년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
- 기업체 방문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조직 내  
성차별,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와 건전한 성문화 정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캠페인'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활동
- 아동과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 향상 교육
- 여성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회,  
여성 인권 영화제, 양성평등 공감콘서트 개최
- 일·가정양립을 위한 해피투게더 부스 운영과 '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 개최, 가정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 운동 전개

## 북부

강릉, 동해, 서울, 속초, 원주, 인천, 춘천 (7개 YWCA)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미투운동 국면에서 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여성인권 아카데미, 시민 강연회, 성평등 캠페인 전개
- 성평등 미디어모니터링 교육
-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 5개 어린이집 원아·교사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
- 6.13지방선거 강원여성유권자네트워크 정책협약식 개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성평등 정책 제안
-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진행, '성평등! 행복날개를 달아라'를 주제로 강연회와 토크콘서트 개최
- 대중매체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 활동 진행, 온라인커뮤니티, 웹툰, 네이버 국어사전 등 이슈모니터링 진행.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과 여성의 눈으로 성서읽기,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교계의 관심 환기, 지역사회 성인지 거버넌스 구축활동을 통해 여성폴뿌리 조직을 발굴하고 서울시와 성인지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서부

광주, 광양, 남원, 목포, 서귀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제주(10개 YWCA)

- 6·13지방선거 대비 각 정당에 성평등 정책 마련과 실현 촉구 성명서 발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 여성친화 경제 환경 조성, 성평등 정책과 행정시행,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 양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과 노사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 진행, 찾아가는 노사상생교육 진행하여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노사간 의사소통 문화 조성
- 성인, 청소년 대상 성평등교육과 캠페인,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성평등 의식제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교육·모니터링·워크숍 진행, 성평등 의식 UP!, 쉽게 배우는 성평등 교육 생활 속·미디어 속 성차별 모니터링 등 우리의 삶 속에 뿌리박힌 성차별인식을 깨기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 진행
- 지역주민과 회원들이 함께하는 마을주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마을모니터링 실시, 마을주민 주도의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시도
- ‘YWCA 블랙 목요일 캠페인’을 통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표명,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3.8여성의 날을 기념 성평등 문화 확산

## 중부

논산, 대전, 서천, 세종, 제천, 천안, 청주, 충주(8개 YWCA)

-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주류화 추진기반 마련 ;  
성평등 정책, 여성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제안
- 여성포럼 '실질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을  
주제로 남녀임금격차해소방법을 고민하고 자원방안 모색
- 동일노동 동일임금 거리캠페인 실시
-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실시
- '지역에서 왜 YWCA가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중부회원대회 개최
- 돌봄정의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경제적 역량강화 노력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회원 YWCA를 중심 성차별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 각 분야의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양성,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 집단상담, 상습신고가정 대상  
모니터링 실시,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시의회 정책제안,  
'와이썸썸' 찾아가는 어린이 성평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인형극,  
폭력없는 사회문화조성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4. YWCA의 관련 성명서

### 미투운동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선언

#### 검찰내 성추행 진상규명과 성폭력 문화 해소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8년 만에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그간 감추어졌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감추어져 왔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은커녕 이를 은폐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하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점 등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검찰내 성추행 문제는 특별히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구현해야 할 조직이기에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부장제 문화와 서열적 위계문화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억압과 폭력으로 내몰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6년부터 문단과 영화계를 비롯한 예술계는 물론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성폭력 피해의 폭로가 계속되었다. 한림대 성심병원에 이어 최근 아시아나항공사와 미래에셋증권사 대표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공론화에 이어 소위 민족작가라 불리는 고은 시인의 상습적인 여성 문인에 대한 성추행 폭로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을 조직에서 배제하고 주변화시키는,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이다. 동시에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그러므로 정부, 검찰, 민간 기업이 직장내 성폭력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조치한 것은 여성을 직장과 가정 등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폭력을 겪도록 방치하였고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YWCA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일부 남성의 일탈적 행동이나 관습이 아니라 성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가 검찰 외부 구성원의 주도하에 분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오락거리로 취급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성폭력 가해자 및 기업 관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과 성적 대상화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검찰을 필두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전체에 성폭력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교육, 처벌을 넘어 성폭력 관행이 한국사회에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산시키고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문화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성폭력의 경험을 용기 있게 말하는 피해자들을 향한 2차 피해와 직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여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항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는 남성중심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억압적 구조에서 만연한 성차별 문화와 성폭력 범죄 종식을 위해 직장내 여성의 성적대상화 및 성추행, 성폭력 척결을 위한 공무원, 검찰, 경찰,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행동과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용기 있게 말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여성폭력 문화를 종식시키고자 한국YWCA와 전국 52개 회원YWCA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성추행과 성폭력범죄에 대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와 철저한 예방책을 실시하라.

둘째, 모든 학교와 공기업 민간기업 등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라.

셋째, 민간기업, 검찰, 공무원 등의 조직체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넷째,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과 인신공격이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라.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는 8년간 검찰내에서 자행된

성추행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공고히 한 우리사회의 성차별 문화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문화, 위계적 서열문화를 방기한 책임을 통감하며 검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정한 용기를 내어준 피해검사에게 위로의 마음과 지지를 보낸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직무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관점의 수사를 실시하여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 한국YWCA는 전국52개 회원YWCA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18년 2월 12일

한국YWCA연합회와 52개 회원YWCA

(강릉, 거제, 경주, 고양, 광명, 광양, 광주, 김해, 남양주,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사천, 서귀포, 서울, 서천,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평택, 포항, 하남)

##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 성명서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 자치단체장 남성 독점구조 개선 대책 마련,
-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 성평등 의식을 중요 후보 검증 기준으로 삼아야

제7회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온 현재 각 정당들은 지난 달부터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천 및 선거 전략 기획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7년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로, 최근 #미투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성폭력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정치적 시험대이다. 그 핵심은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미투운동은 사회전반 모든 영역에서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 문화에서 살아온 대한민국여성들의 격어내야 했던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왔고,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과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 통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비례대표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 3%에 불과했던 여성국회의원이 30대 국회인 지금, 300명 중 51명인 17%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여성의 의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율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계의원연맹의 통계 기준 193개국 중 116위이며 (2018년 1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14.3%, 25.2%에 불과하였다. 민선 6기까지 역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96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고 역대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총 1378명 중 여성은 21명으로 1.52%에 그쳤다. 이미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 조항 및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요식적이거나 위법적 태도만을 보여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미투운동을 통한 여성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각 정당들은 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퍼센트 이상 할당 등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남성 독점을 해소하고 여성대표성을 확대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의 전력 및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기준으로 심사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여성 공천 할당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중앙당 차원의 감시·감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립·이행하라.

2018년 4월 13일

한국YWCA연합회, 전국52개 회원YWCA

## ※ 한국YWCA가 걸어온 길

### 1922~1941 민족운동과 여성해방 시대

- 김활란, 유각경, 김필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조선YWCA) 설립
- 제1회 하령회 개최(1922)
- 지방조직 결성 위한 17개 도시 전국순회
- 창립연도 광주, 서울YWCA 설립
- 북한지역 5개 YWCA(함흥, 평양, 원산, 선천, 안주)
- 농촌계몽운동 : 샘골과 최용신
- 문맹퇴치운동 : 공민학교
- 조혼 및 공창폐지운동

### 1946~1962 전후재건과 도약의 시대(20주년)

- 동래농예원 기술교육
- 호남여숙, 성빈여사, 소녀의 집 등 기숙학교 설립
- Y-턴과 대학YWCA 분리 통한 학생운동 활성화
- 혼인신고운동과 여성의 친족상속법 소책자 발행
- 친족상속법 개정과 가사재판소 설치 주장

### 1963~1972 여성인권 보호운동 시대(50주년)

- 근로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기업대표들과 근로여성문제 간담회
- 농촌여성을 위한 봉사활동
- 도시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인권운동
-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탁아소 운영
- 야간학교를 통한 여성교육 기회 제공
- 중산층 여성을 위한 취미활동과 자질향상 교육

## 1973~1979 근로조건 향상과 여성직업개발 시대

- 가족법 개정 운동
- 청계천노동자 평화교실 중심의 여성노동자 의식교육
- 여행원 결혼각서 폐지 운동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 중재
- 도배사, 타일도장사, 세탁사 등 새로운 여성직종 개발
- 파출부 교육 교재 발간 및 돌봄노동 전문화 교육
- 인천 수은공장 설립 반대운동 통한 환경운동 전개
- 원폭피해자 돕기운동
- 버스 안내원 인권옹호 활동

## 1980~1995 소비자교육과 생활운동 시대

-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 증가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규정 제도개선운동, 장애우 복지운동
-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 저소득층 여성 경제자립을 위한 무료직업상담 운영
- 25세 여성조기정년제 폐지운동 전개
-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 인권운동으로 발전한 소비자운동
- 농어촌 영양특별 사업
- 건전한 TV문화 육성을 위한 모니터활동
- 시범직장탁아소 6개 설립, 직장탁아 모델 창출
- '일하는 여성의 집'(현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 개발
-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문화관 건립 추진
- YWCA가 독자개발한 '아나바다'사업 전개
- 우리농산물먹기운동과 우리농산물 직거래운동
- 인신매매추방운동
- 북한 여성과의 만남과 한민족여성대회(연변, 뉴욕)성사

### 1996~2002 평화구현 시대(80주년)

- 남북인간 띠잇기와 북한 분유보내기운동
- 북한YWCA 재건을 위한 모금운동
-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상담활동 및 취업훈련 지원
- 사랑의 떡거리 나누기 운동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녹색소비자운동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직종개발과 취업 확대
- 북한 바로알기 및 북한이탈주민 돕기 활동
-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

### 2003~2012 생명살림 시대(90주년)

- 학교폭력, 성폭력 방지운동
- 청소년리더십 개발을 위한 키다리학교
- 생명살림 먹을거리 나누기와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짱크머니’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방과후교실 ‘다래교실’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
- YWCA 지구시민활동가 ‘도스뜨(친구)’ 인도 파견
-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개최
- 건전한 혼례문화조성 운동
- 국제연대 강화 : UNSCR1325네트워크,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 여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
- YWCA 베트남어방송으로 다문화 여성리더십 개발
-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한하늘 한땅’ 운동
- 아시아 빈곤여성 영양제 보내기 운동
- 사회적기업 개발을 통한 사회적 대안경제 운동
- 돌봄과살림 사업 전문화
- 노인복지시설 은학의 집 운영

## 2013~현재 탈핵생명, 성평등 운동 시대

-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YWCA 탈핵 불의 날 캠페인
- 방사능오염 먹을거리 감시와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YWCA 10만 서명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걷기
- 남녀 임금격차 인식개선 위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 고리 1호기 폐쇄 결정
- 광역단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 ‘생명숲돌봄센터’ 확대 운영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
- 가사지원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 YWCA정론지 『여·세』 발간
- 총선대비 탈핵, 성평등 의제화 활동
- YWCA전국회원대회(2016)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운동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 기후변화와 여성원탁회의 개최
-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모임
- 북한 수해기금 1만달러 전달
- 국민소송단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사고 6주기- YWCA 150차 탈핵캠페인과 탈핵주간 전국캠페인
-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61) 참가
- 기독여성주의 연구모임, 2차(3월) 3차(4월) 4차(5월)
- 제1기 YWCA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
- ‘길위의 평화학교 : 한라에서 백두까지’ 포럼(1차~5차)
- 생명숲돌봄센터 보육사 교육(상, 하반기)
- 한국YWCA연합회 창립 95주년 기념예배·기념식

- 제19대 대통령 선거 한국YWCA 정책요구서 전달
-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재수립을 위한 한국YWCA 정책제안서
- 동일임금의날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과 워크숍 개최
- 국제여성평화걷기/ 심포지엄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의날
- YWCA 직업훈련 실무자 워크숍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 제소 대응 촉구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연대 가입
- 한국YWCA 정책협의회
- 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네트워크 분기별 모임 진행
- 성인지적 재난 대응관련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제안
- 성평등헌법 릴레이토론회
- 제15회,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성평등헌법 YWCA토론회
-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 발족
-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연수
- NCS 아이돌봄분야 보고서 발간
- 검찰 내 성폭력 사건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3.8 여성의날 캠페인 전개, 미투운동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선언 발표
- #미투와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단체로 활동
- 6차에 걸친 성차별 성폭력 끝장문화제 참여
-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날’ 제정운동 및 #페이미투 캠페인
- 지역위원회별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1차, 2차 교육 실시
-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 제 7차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YWCA 유권자운동 전개
- 여성폭력 관련 시설 중견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에 참여
-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 300인 선언 기자회견 및 성평등개헌 요구안 전달
- YWCA 여성평화순례-한라편, 지리편
- 한국YWCA 창립95, 96주년 희망나눔콘서트 ‘동행’

## II. 성평등 운동 : 주요 이슈

### 1. 성평등 문화

성평등문화란 문자 그대로 성적으로 평등한 문화를 말한다. 그렇다면 성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 무엇보다 평등하다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으로 결국 성평등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차별이 없는 상황 혹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성적으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존여비사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나 무시 등은 제재되거나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존여비나 이로 인한 남아선호 등은 그야말로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므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회가 성평등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집합양식인 ‘문화’를 살핍으로써 알 수 있으며 성평등한 사회인가 성차별적인 사회인가는 그 사회의 ‘성문화’를 살펴야만 한다.

한 사회의 성문화는 그 사회가 성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을 뜻하며 성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성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성평등하지 않은 문화는 어느 한 성에 비해 다른 성들이 종속되어 있거나 열등하다고 하는 인식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내면화하게 만든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남녀사이를 강하게 규정하는데, 여성을 한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한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되면 여성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거나 실력을 쌓기보다는 남성에게 성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모가꾸기에 비생산적일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

한 사회의 성문화는 그것이 표현되는 미디어, 영화, 드라마, 교육과정, 사회규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가 없다”거나 “여성의 안돼요는 돼요”라던가 하는 말로 남성의 성은 적극적인 것, 여성의 성은 소극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거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에서도 “No means Yes”라는 말이 있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중심의 성문화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꼬집어 아예 ‘강간문화’라는 표현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성문화의 현실로 인해 성평등문화에는 항상 성평등문화 ‘확산’이 함께 따라온다. 즉 여전히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에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과 제도의 제·개정운동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일구는 문화운동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위로부터의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성주류화가 있다. 성주류화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한 관점이 관철되어 작동하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성주류화의 3대 도구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통계를 꼽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주류화를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도구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강한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도와 정책은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성운동이나 여성주의에 대한 백래시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역차별 주장과 더불어 여성의 자리를 단지 어머니나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여성상에 고정시키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존의 여성상을 벗어나려는 여성에게는 낙인을 찍고 사회적 비난을 퍼붓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여성상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성상이 규범적으로 올바르다는 메시지를 재생산함으로써 여성들을 고정된 틀에 가두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고정된 여성상을 재생산하는 미디어를 비평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생산하는 창작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화, 드라마 등에 여성이 등장하는지 그러한 여성이 주체적인지를 비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영화 등급체계에 'F등급'을 표시하여 여성감독이나 여성 작가의 창작품이나 등장하는 여성인물이 주요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가 부과하는 외모중심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체적 선언인 “탈코르셋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성평등한 문화는 단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제도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비주체적 존재로 명명하고자 하는 규범과 문화 속에서 주체적 존재로 서고자 하는 깨달음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평등한 문화 확산은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수준에서의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하며 이렇게 여성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량강화(임파워먼트, empowerment)가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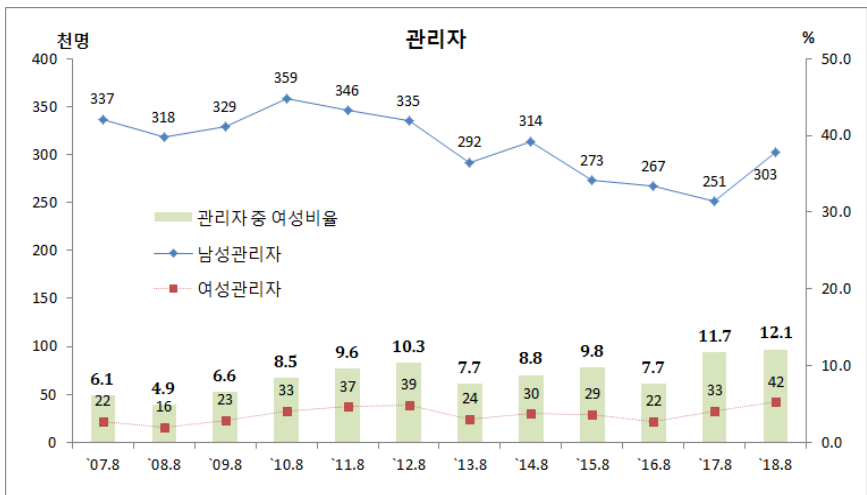
## 2. 여성 대표성

여성대표성 현황으로 관리자와 국회의원 여성 비율, 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살펴보았다. 여성임원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평가 지표인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의 한국 순위를 확인하고 각 국의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 현황을 소개하였다.

### 1) 관리자 추이

-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018년 8월 기준 12.1%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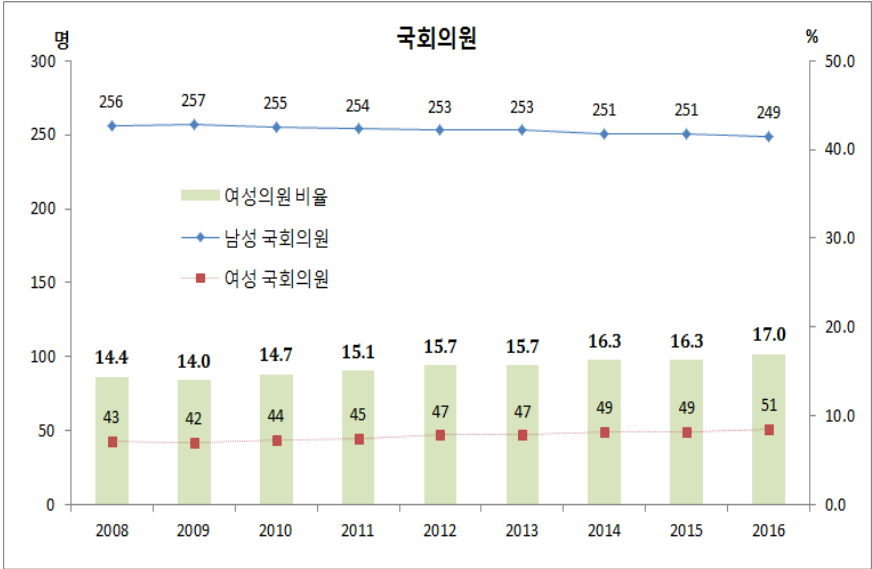
※ 관리자 정의 : 의회 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표, 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조정한다.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한국표준직업분류).



자료 : 통계청, 「2007-2018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2018년2월 통계청시계열 보정 후 원자료

## 2) 국회의원 여성 비율

- 여성 국회의원 51명(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17.0%/2016년 기준)



원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IPU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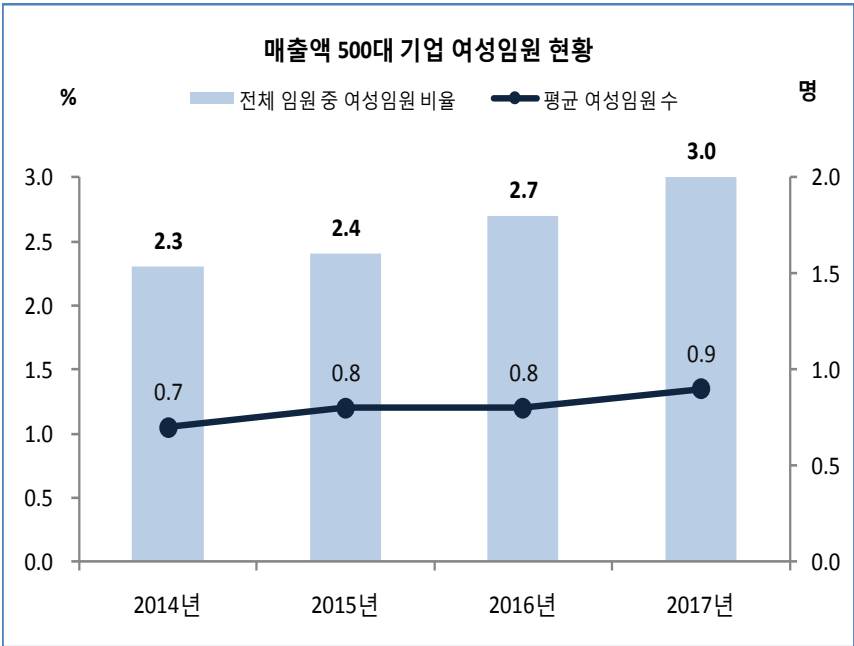
자료 : 주재선 외(2017),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3) 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

- 매출액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7년 기준 3% 불과.  
기업당 평균 여성 임원 수는 0.9명

※임원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집계.  
임원은 등기여부로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합, 또는 상근 여부로 상근 임원과 비상근임원으로 분류. 사업보고서에 공개한 임원 수에 근거하여 산출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보도자료(2018. 11. 29), '500대 여성임원 현황 분석'

#### 4)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

- 영국 시사주간지 Economist지가 2013년부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발표 시작
- 한국은 2013년 발표 시작부터 2018년까지 최하위 (2013년 26개 국가 중 26위, 2018년 29개 국가 중 29위)
- 한국은 특히, 10개 평가 항목 중 '전일제 임금 격차'를 비롯 대표성 지표인 '여성 관리자 비율',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에서 2013년부터 최하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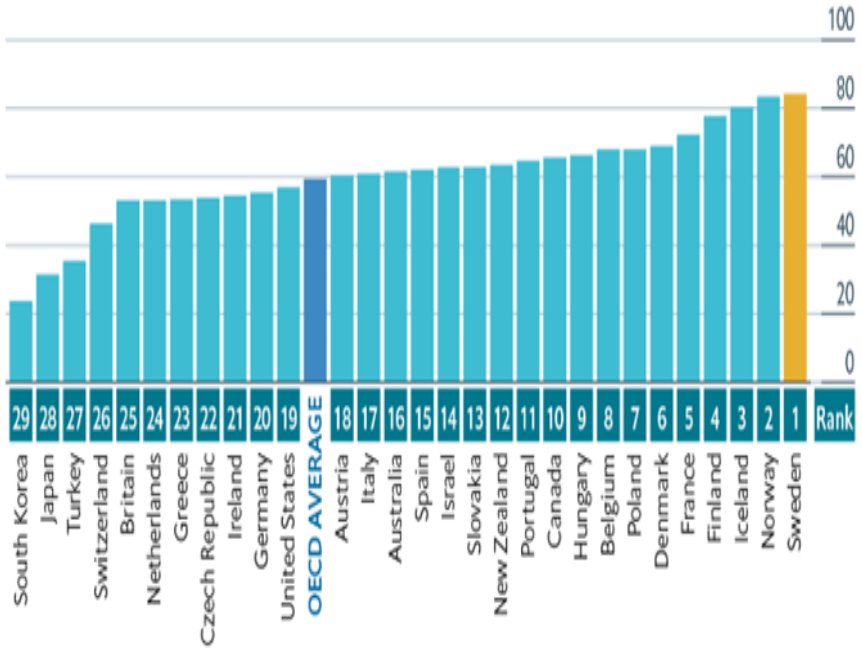
연도	평가항목
2013년 발표	①고등교육 남녀 격차 ②경제활동참가율 ③전일제근로자 임금 격차 ④여성관리자 비율
2014, 2015년 발표	①고등교육 남녀 격차 ②경제활동참가율 ③전일제근로자 임금 격차 ④여성 관리자 비율 ⑤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⑥평균 임금 대비 순보육 비용 ⑦여성유급출산휴가 ⑧GMAT 시험 (비즈니스 스쿨) 여성 응시율 ⑨여성 의원 비율
2016년 ~현재	①고등교육 남녀 격차 ②경제활동참가율 ③전일제 중위임금 격차 ④여성 관리자 비율 ⑤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⑥평균 임금 대비 순보육 비용 ⑦여성유급출산휴가 ⑧남성육아휴직⑨GMAT 시험 (비즈니스 스쿨) 여성 응시율 ⑩여성 의원 비율

자료 : 김난주, 김태홍, 이승현, 이서현, 전병유, 박미연(2017), 「2017년여성관리자  
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유리천장지수 순위〉

### Glass-ceiling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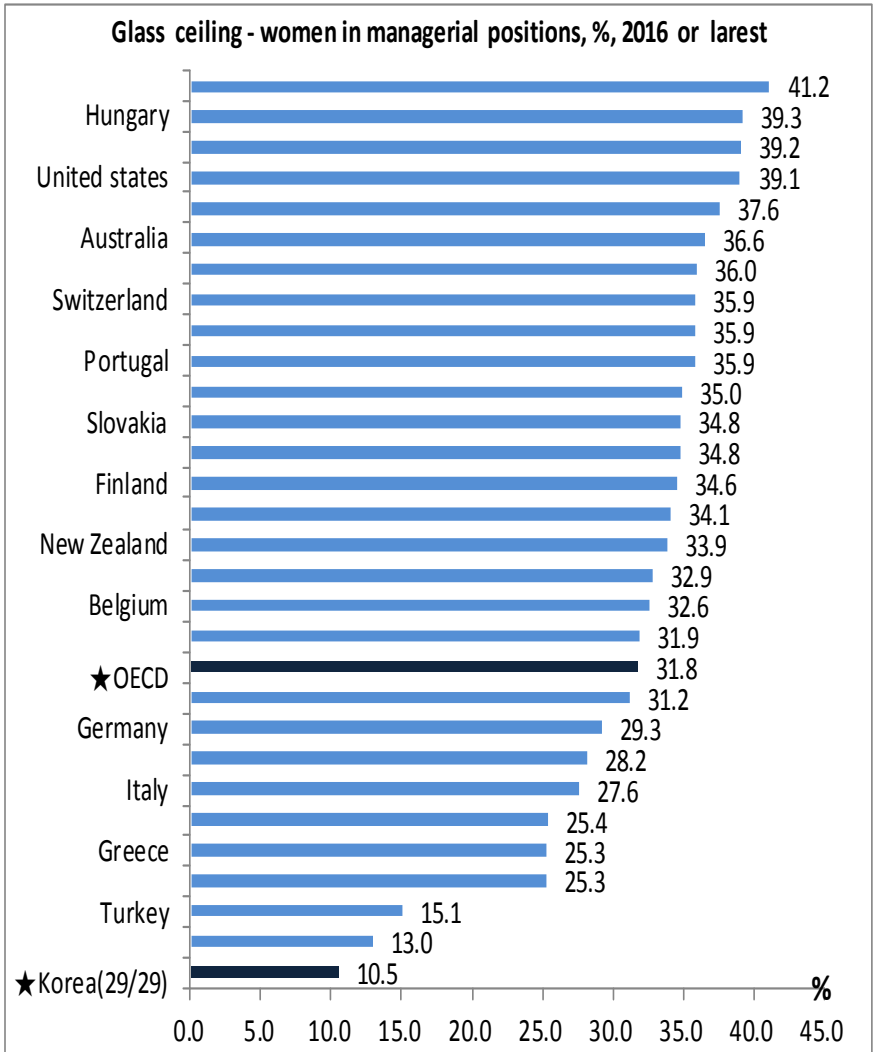
Environment for working women, 2017 or latest, 100=best



자료: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8/02/15/the-glass-ceiling-index>

① 여성관리자 비율

- 한국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0.5%로 OECD 비교 국가 중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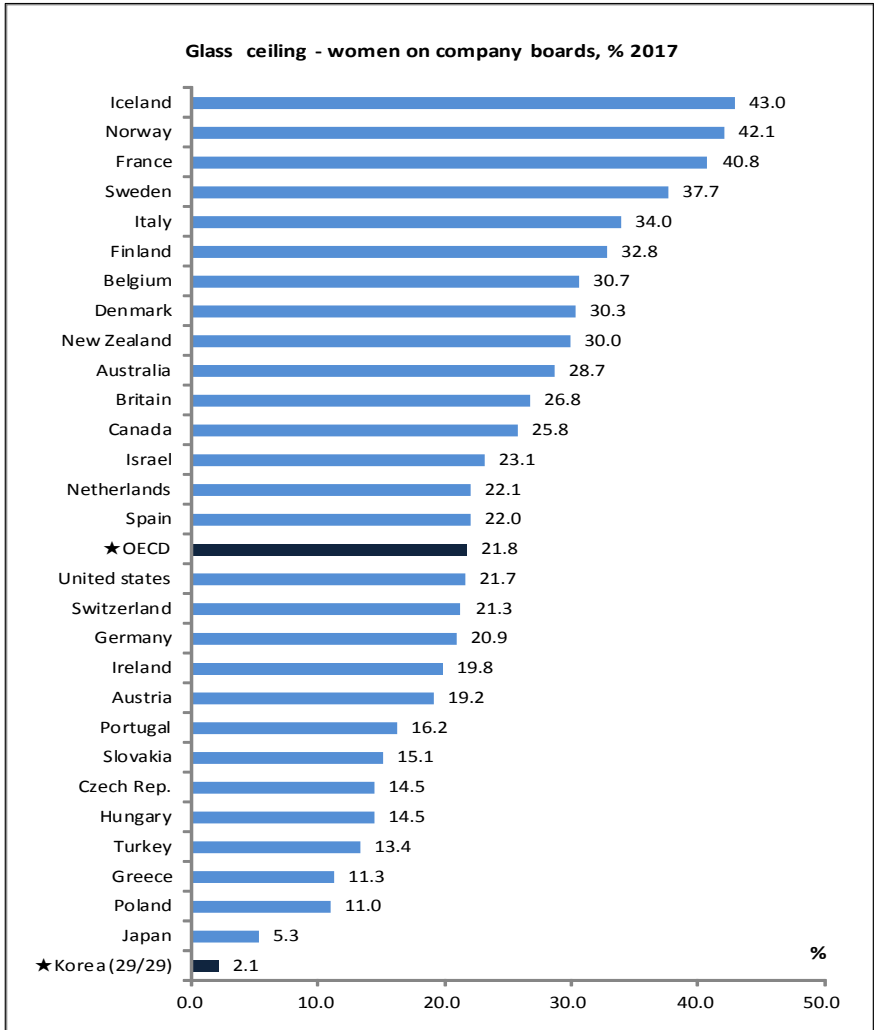


주 : 2018년 발표 유리천장지수

자료 :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8/02/15/the-glass-ceiling-index>

## ②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 한국의 기업 이사회 비율은 2.1%로 OECD 비교 국가 중 최하위



주 : 2018년 발표 유리천장지수

자료 :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8/02/15/the-glass-ceiling-index>

※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 현황

① 국가별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 현황(2017년 기준)

국가명	할당제 여부	이사회 할당제 관련 내용
EU Profile	△	<p>·기업 이사회에서의 성별 다양성 문제는 2010년부터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의제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여 높은 관심을 받았음.</p> <p>·이사회에서 성별 균형을 위해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기규제를 해야 한다는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이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음. 이 문제에 대응하여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전체의 상장 기업 이사회들의 다양성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에서의 평등 촉진에 관한 지침을 제안함. 지침은 다음과 같음</p> <p>1) 상장기업내비상임이사를 채용함에 있어 과소대표된 성의 40%를 채워야 함</p> <p>2) 대상 선정 과정에 있어 확실하고 공식적인 기준으로 채택 및 시행해야함</p> <p>3) 후보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과소 대표성을 가진 후보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자격요건은 이사회 임명의 핵심 기준임</p> <p>4) 회원국은 지침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p> <p>·EU 이사회에서 성 평등을 향상시키는 조치에 찬성하여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회원들은 EU수준의 구속력 있는 조치는 목표를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국가 차원의 조치 또는 구속력 없는 조치를 선호함. 이에 지속적인 반대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 지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p>
Austria	○	<p>·주정부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감독위원회에 대한 성별 할당제는 2011년 3월부터 시행됨.</p> <p>·여성대표 할당제는 2013년까지 25%, 2018년까지 35%를 요구함. 하지만 모든 회사는 이미 35% 할당제를 준수하고 있음</p>
Belgium	○	<p>·2011년 상장 회사와 일부 연방 국영 기업의 이사회에서 최소 1/3의 남성 감독과 1/3의 여성 감독이 요구되는 성 다양성에 관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발표됨</p> <p>·대형 상장 기업은 2017년까지, 중소 상장 기업은 2019년까지 이를 준수해야함. 연방 국유 기업의 대부분도 이 요구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모두 준수하고 있음</p>
Denmark	○	<p>·덴마크의 상장 기업, 대형 비상장 기업, 정부 소유 유한 책임 회사 및 정부 기관에서 이사회 및 관리직의 성별 균형 개선 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음</p>

국가명	할당제 여부	이사회 할당제 관련 내용
		·2013년부터 이사회나 관리직에서 과소대표한 성별을 가진 회사는 연례 보고서 또는 웹 사이트에서 성 평등 진척사항(대략 성별 대표성 40%)과 양성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공개해야 함
Finland	△	·상장 회사 이사회에는 성별 할당제 규정 없음. 그러나 정부 기관이나 국영 기업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사회에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음. 핀란드 상공회의소(FCC)는 할당제는 비효율적이며 주주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믿음. FCC는 이사회에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경영진의 경력개발을 장려함
France	○	·2017년 1월 성별에 대한 40%의 임법 할당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됨. 1) 규제된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2) 3년 연속 500인 이상의 직원(2020년 250명으로 감소)과 함께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5천만 유로 이상인 민간 기업 3) 정부 기관 ·임원이 8인 이하인 이사회에서는 각 성별 구성원의 격차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이를 불이행 한 경우 임명은 무효이며 모든 임원의 비용지급은 요건이 충족 될 때까지 보류 될 수 있음
Germany	○	·독일 의회는 2015년 3월 상장된 약 110개의 기업들은 비상임 감독이사회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6년 효력을 발생함. 할당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임원직을 공식으로 둘 것을 명시함 ·독일 내 약 3,500개의 중소기업들도 “임원직 내 남성평등참여에 관한법”을 적용 받음. 이 규정은 국영 기업에도 적용될 것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상장 기업은 경영 보고서의 기업 지배 구조 설명서에 할당제 준수에 관련하여 보고해야함
Greece	○	·남녀 평등법의 일환으로 2000년 9월에 시행됨. 주 또는 지방 정부 소유의 회사 이사회의 국영 임명 부분에 대해 1/3의 성별 할당제가 있음
Iceland	○	·2010년 3월에 노르웨이의 모범을 따라 공공 및 사적 유한 책임 회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이사회 성별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됨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는 각 성별의 40% 이상을 이사회에서 유지해야함.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남녀 모두를 대표해야 함

국가명	할당제 여부	이사회 할당제 관련 내용
Italy	○	<p>상장기업, 공공참여기업, 국영기업의 성별할당제 법안은 2011년 8월에 발효됨. 법률에 따라 임원 및 감사에서 될 대표되는 성별을 최소 1/3을 유지해야함.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장 회사는 CONSOB(이탈리아 감독기관)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 기간이 경과 한 후에도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CONSOB는 임원의 경우 100,000~100만 유로(감사 이사회는 경우 20,000~200,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해야 함. 벌금 후 3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준수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교체될 수 있음. 아직까지 이를 위반한 회사는 없음</p>
Netherlands	○	<p>·네덜란드의 민법은 2013년에 발효됨. 이 법안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기업들은 운영 및 감독위원회 이사회 수를 각 성별을 적어도 30% 할당하도록 해야함. 이 법안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칙준수·예외설명”으로 시행됨. 이 법안은 2016년에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지만, 동일한 용어로 네덜란드 의회에서 2017년 초로 연장됨. 정부는 이것이 마지막 시도이며, 목표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무적인 성별할당제가 시행될 것임</p>
Norway	○	<p>·2005년 세계 최초로 공공 유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성별 다양성에 중점을 둔, 노르웨이 공공 유한 책임 회사 법(Norwegian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은 다음 조항에따라 이사회에서 남녀 구성원을 40% 할당해야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회 구성원이 2~3인인 경우 양성을 대표해야 하며,</li> <li>2) 이사회가 4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 경우, 양성은 최소 각각 2인</li> <li>3) 이사회가 6인에서 8인으로 구성된 경우, 양성은 최소 각각 3인</li> <li>4) 이사회가 9인인 경우 양성 모두 4명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9인이상인 경우, 양성 모두 40%를 구성해야 함.</li> <li>5) 1-4의 규정은 임원의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함</li> </ol> <p>·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이 해산 될 수 있으며 국영 기업, 지방 자치 단체, 대형 협동조합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2/3 이상을 소유한 기업들에게 적용됨.</p>
Spain	○	<p>·2007년 3월 스페인 의회가 승인한 성평등기본법은 이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표할 것을 권고함</p> <p>·2014년 새 법안은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 모두 이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최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함.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받지 않아서 정부는 특정 공공계약을 할 때 규정을 준수할 것을 검토할 것임</p>
Sweden	△	<p>·이사회 성 다양성 주제는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옴. 현 정부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가 2016년까지 각각의 성별을 적어도 40%이상</p>

국가명	할당제 여부	이사회 할당제 관련 내용
		<p>대표해야 한다고 명시함</p> <p>·하지만 성별의 대표성의 진전이 있었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결론을 내렸고, 2019년까지 상장 및 국영 회사 이사회에서 각 성별의 40% 대표성에 대한 법안 초안을 요구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음</p>
Argentina	△	<p>·이사회에 여성 할당제 없음</p> <p>·하지만 입법권에만 성별 할당제가 존재하는데 의회선거 후보자 명단에 최소 3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함(아르헨티나 할당제의 독특성은 할당제가 선거제도 내에서 의무사항으로 적용됨)</p>
Brazil	X	<p>·성별 할당제와 관련된 법안은 여전히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음.</p> <p>2015년에 제안된 이 법안은 이사회에 각각 최소 30%의 여성 대표를 요구함</p>
Chile	X	<p>·여성부는 각 국영기업 이사회에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한 2개의 법안을 칠레 의회에 제출되도록 목표를 설정함.</p> <p>현재 논의중인 1) 2014년 9월 법안은 일부 회사의 이사회에 성별 할당제를 30%로 책정함. 2) 또한 2015년 1월에 제안된 법안은 특정 국영기업에서 각 성별에 대해 40% 할당제를 시행하려고 함</p>
Colombia	○	<p>·2000년 5월 의사결정 직책에 여성의 30% 할당제가 도입됨. 이 법은 국영기업, 국가가 다수 주주인 회사 및 모든 정부 기관에 적용됨.</p> <p>·이사회 직위와 관련하여 사적 기관에 대한 성별 할당제는 없음</p>
Peru	X	<p>·법적 구속력 있는 성별 할당제는 없음</p> <p>·2015년 의회에서 법안의 초안(3835 / 2014-CR)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10% 여성 대표를 요구했지만 통과하지 못함</p>
Canada	X	<p>·공기업의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 없음</p> <p>·하지만 50% 성별 할당제가 퀘벡 정부 소유 기업에서 2011년 시행됨</p>
United States	X	<p>이사회에 여성 할당제 없음</p>
India	○	<p>·회사법(Act)은 2013년 8월에 개정되었는데 처음으로 모든 상장 회사 및 기타 공공 유한 회사가 적어도 한 명의 여성 감독을 이사회에 임명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여성 임원의 공석이 생길 경우 3개월 이내에 다른 여성임원 혹은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함.</p> <p>·입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고용시기를 규정</p>

국가명	할당제 여부	이사회 할당제 관련 내용
Indonesia	△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 없음. 그러나 각 정당 출신 의원 중 3분의 1은 의회 선거에서 여성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음
Japan	X	·이사회에서 여성의 수 또는 비율을 요구하는 정부의 할당제는 없음 ·하지만 2020년 30% 임원비율 할당, 여성의 직장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법 발의,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우선 정책 등 남녀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Korea	X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 없음
Malaysia	○	·2011년 회사의 여성 고위직 및 이사회 30% 이상을 할당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함 ·지속적인 규제 및 기업 지원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성별 다양성을 개선하고 증가시키고 있음. 정부는 2020년까지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을 59%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Philippines	X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 없음
Singapore	X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 없음 ·하지만 People's Action Party Women's Wing과 BoardAgender는 2017년 3월 23일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2020년까지 여성 비율을 20%로 배가시키는 공동 제안을 함. 이 제안이 허용된다면, 다양성 목표 설정은 기업 지배 구조에 의무적인 요소가 될 것임
Taiwan	X	·상장 기업의 이사회는 성별 할당제 없음 ·대만의 국영 기업과 법정 재단은 적어도 3분의 1은 여성 대표를 이사회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함
Australia	X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 없음 ·호주증권거래소(ASX)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상장 회사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를 포함하여 조직 전반에 적용되는 측정 가능한 목표의 수립, 검토 및 보고를 포함한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함. 2015년 호주 이사회(AICD)는 모든 이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목표 30%를 발표했으며 ASX 200기업은 2018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함. 이외에 1) Male Champions of Change(2010년 남성 CEO 및 이사회 리더십 그룹으로 설립된 단체로 리더십의 여성 확대를 위한 남성들의 모임) 2) Chief Executive Women(기업, 공공부문 및

국가명	할당제 여부	이사회 할당제 관련 내용
		비영리부문의 여성지도자를 대표하는 조직) 3) 직장성별평등기구(WGEA)등 효력이 있는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New Zealand	X	·여성을 위한 성별 할당제는 없음 ·하지만 정부는 여성의 정부부문위원회와 위원회 참여를 45%까지 늘릴 것을 약속함(우선자격조건에는 교육, 훈련, 리더십) ·여성부는 미래의 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감독을 정부 부문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지명 할 책임이 있음(정부부문위원회 2014년 41.7% -> 2015년 43.4%)
Kenya	○	·2010년 케냐 헌법은 국영 기업이나 정부가 대주주인 이사회 의석의 2/3 이상을 특정 성별이 차지할 수 없다고 규정함

원출처 : Deloitte(2017),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자료 : 김난주, 황성수, 이승현, 이서현, 박미연(2017), 「남녀 임금 격차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② 캘리포니아주 여성 임원 의무화 도입(2018년)

- 미국 50개주 최초 기업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 시행(2018.9.30.)
-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는 내년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 법안은 곧 바로 발효
- 법안은 2021년까지 이사회 이사가 5명 미만인 기업은 최소 1명, 5명인 기업은 최소 2명, 6명 이상인 기업은 최소 3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
-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달러(약1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30만 달러(약3억 3000만원)를 추가 부과
- 캘리포니아 상장기업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165개 기업에는 여성 임원 전혀 없음

자료 : 조선일보, 캘리포니아, 美 50개 주 처음으로 여성 이사 의무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2/201810020015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2/201810020015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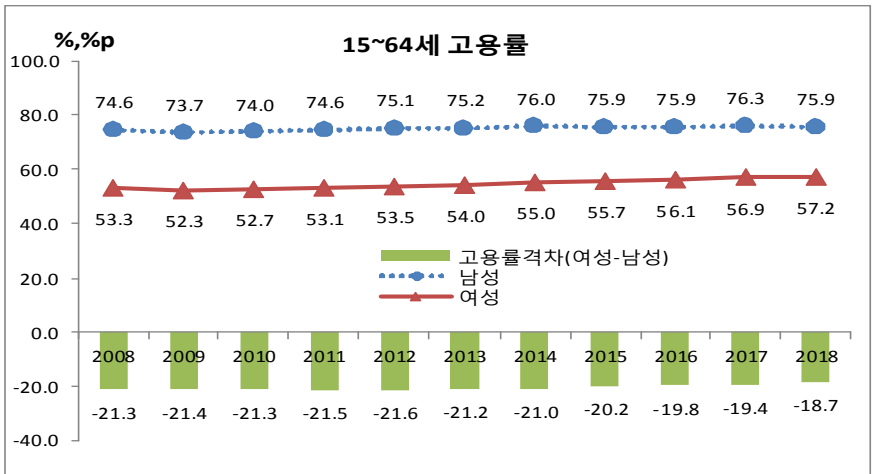
### 3.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고용률과 저임금노동 비율, 성별 임금 격차 추이를 보았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질 수준 제고를 천명한 돌봄경제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고 OECD 국가 비교와 관련하여서는 성별 임금 격차, 저임금노동 비율, 연령별 고용률을 분석하였다.

#### 1) 고용률

- 2018년 15~64세 여성고용률은 57.2%로 처음으로 57%대에 진입함
- 여성고용률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09년 전년 대비 1%p 하락한 이후 상승추세이나 남성에 비해 20%p 내외 고용률 격차 유지
-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2016년 최초 20%p 미만으로 축소, 2018년은 18.7%p로 축소 추세 지속

[그림] 고용률



주 1. 고용률 =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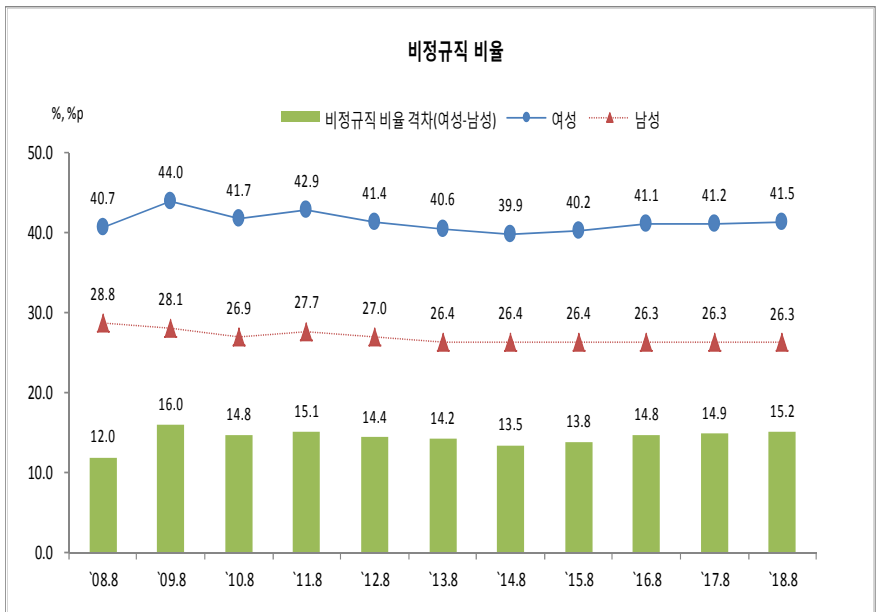
2. OECD 국가비교 고용률 기준 연령 15-64세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 2)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8년 기준 여성 41.5%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9.9%에서 2015년 40.2%로 상승하여 4년 연속 상승추세임
- 남녀 비정규직 격차는 2018년 15.2%p로 2014년 13.5%p에서 확대 추세임. 남녀 비정규직 비율 격차 확대는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2013년 이후 26.3%~26.4%인 것에 비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상승 추세인 것에 기인함

[그림]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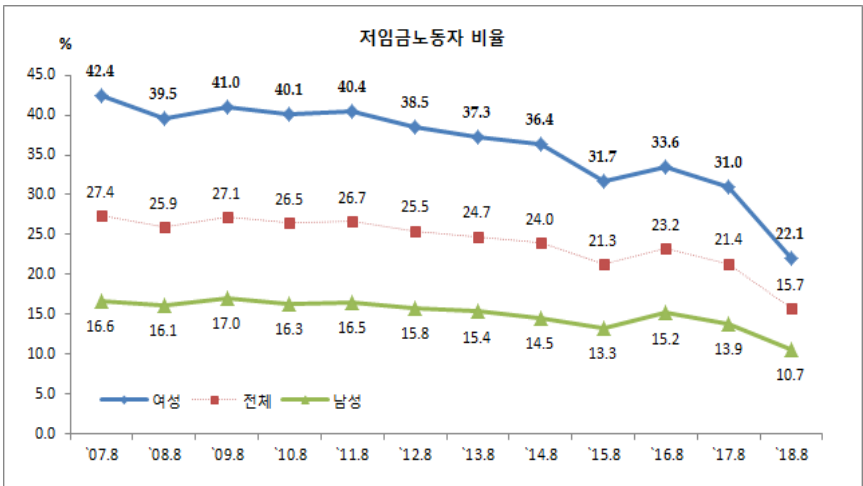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 3) 저임금노동 비율

- 중위임금<sup>5)</sup>의 2/3 미만을 받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18년 여성이 22.1%, 남성이 10.7%임. 2018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
- 2018년 전체 저임금노동자 3,150천명 중 여성은 1,959천명 62.2% 차지, 전체 저임금노동자 규모는 2017년 2,731천명에서 2018년 1,959천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전체 저임금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대 유지

[그림] 저임금노동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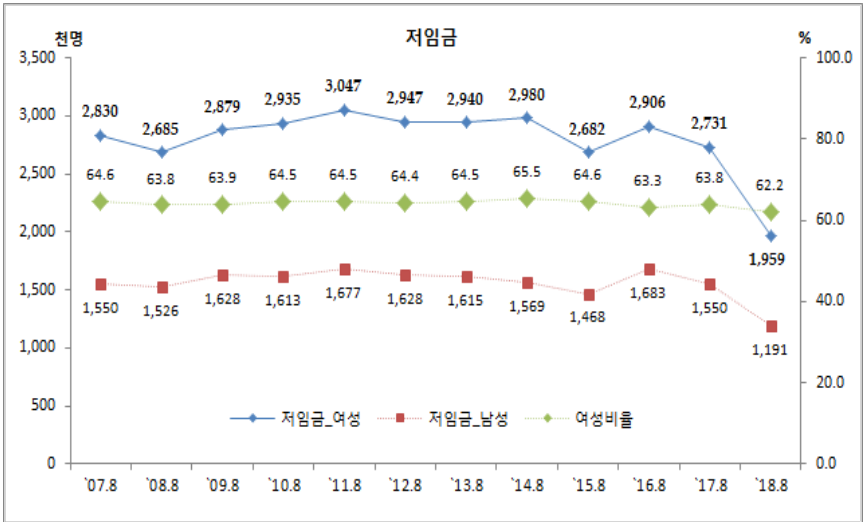
주 1. 시간당 임금=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365)/12/7) 기준.

2. 저임금은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미만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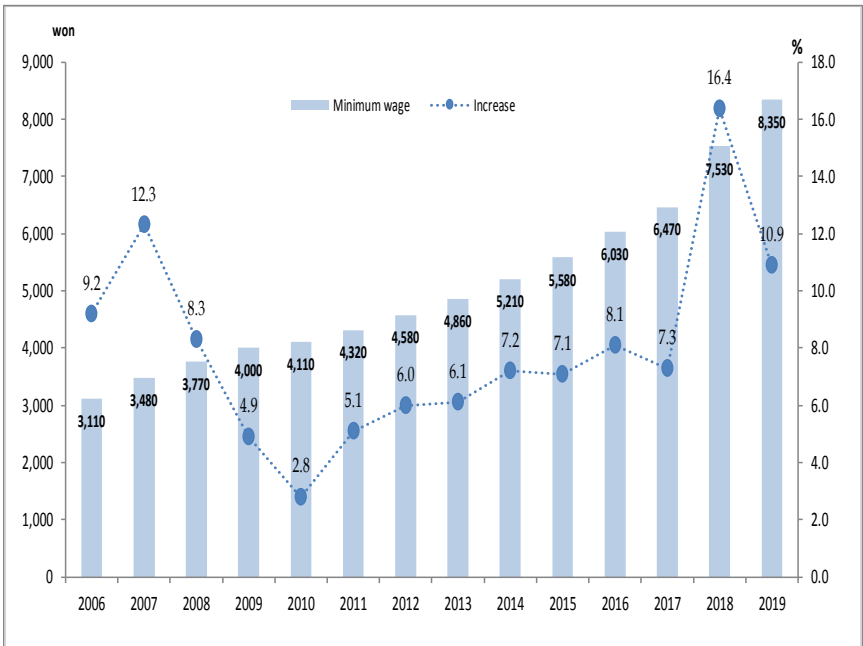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 2018년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전년 대비 8.9%p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임
-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상승함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 월 환산액은 157만원

5) 중위임금은 임금의 중간값으로 평균값과 달리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음. 예를 들어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 1명이 입학하면 학생들 평균 신장이 급변하겠지만, 중앙값은 사실상 변하지 않음.



[그림] 최저임금 추이(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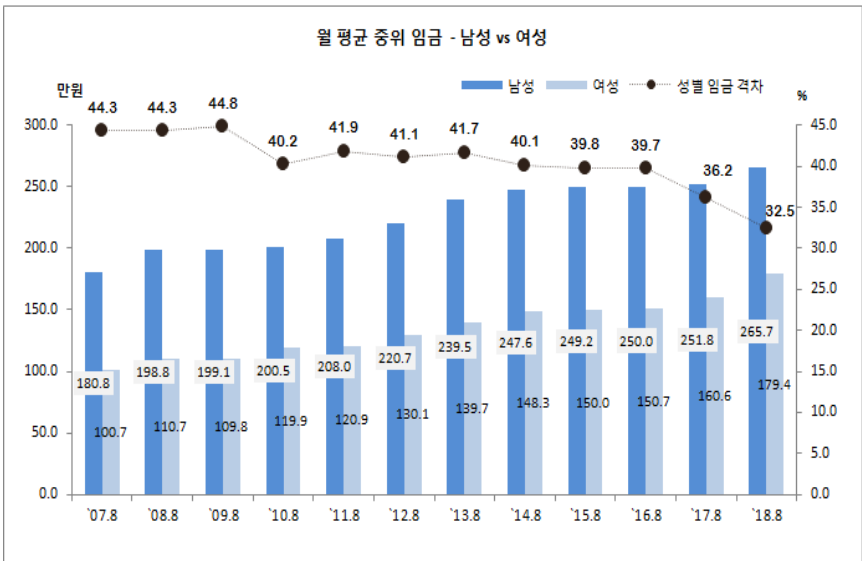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재구성

#### 4) 성별 임금 격차

- 2018년 여성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은 179.4만원으로 2017년 160.6만원 보다 18.8만원, 11.7%. 남성은 265.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만원 5.5%상승
- 2018년 중위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sup>6)</sup> 여성임금 상승폭이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으로 전년 대비 3.7%p 하락함

[그림]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중위임금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6) OECD 발표 'median earnings' gender pay gap 기준에 따름.

5) 돌봄경제<sup>7)</sup> 일자리

- 돌봄경제 일자리 정의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사자 규모 외에 공식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조사 통계는 별도로 없음.
-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돌봄일자리 분류는 소분류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가사 및 육아 도우미’로 정의할 수 없음
- 국가조사통계로 돌봄 일자리 규모 파악은 직업 세분류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로 가능함

〈표〉 돌봄경제 일자리 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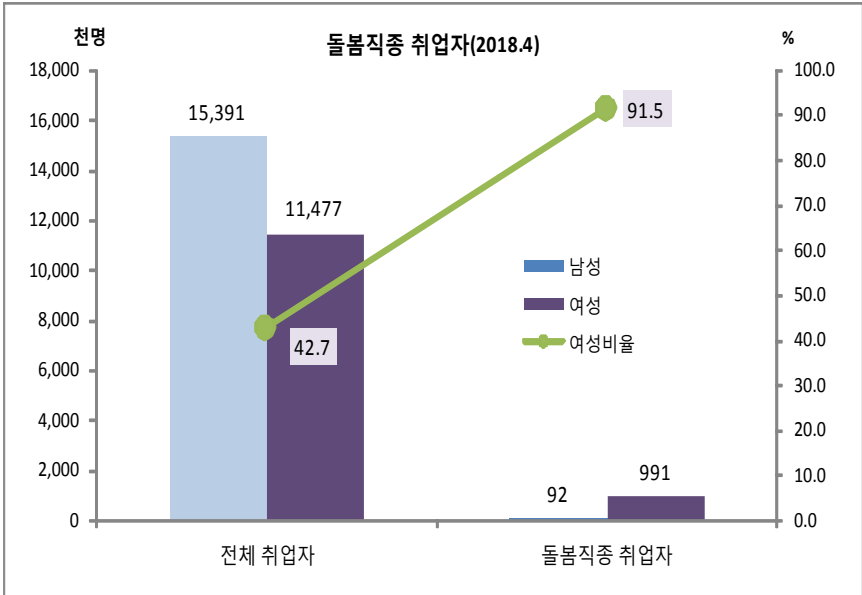
	중분류	소분류	돌봄일자리
1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248. 종교 관련 종사자	
2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
3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주 정형욱·남승연·정은지(2015).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환경 조사」, (경기도가 조여성연구원)의 돌봄일자리 분류표를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기준으로 재구성

7) 정부는 돌봄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를 발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발표- 2019.2.12.)

- 돌봄경제 일자리 여성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42.7%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음
- 2018년 돌봄 일자리 취업자수는 1,083천명이고 이중 여성은 991천명으로 91.5%, 돌봄일자리 취업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 여성초집중 일자리

[그림] 돌봄직종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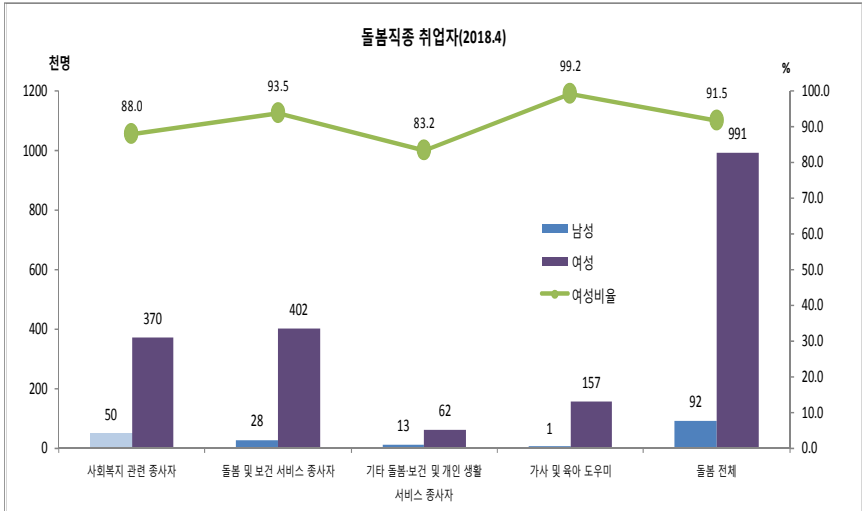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4월 기준) 원자료

### ① 돌봄 직종별 취업자

- 돌봄일자리 직종별 취업자 규모는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430천명으로 가장 많고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여성 취업자수도 402천명으로 가장 많음.
-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외 여성 취업자수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370천명, ‘가사 및 육아도우미’ 157천명,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62천명임

- 돌봄일자리 직종별 여성 취업자 비율은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99.2%로 가장 높음.

[그림] 돌봄직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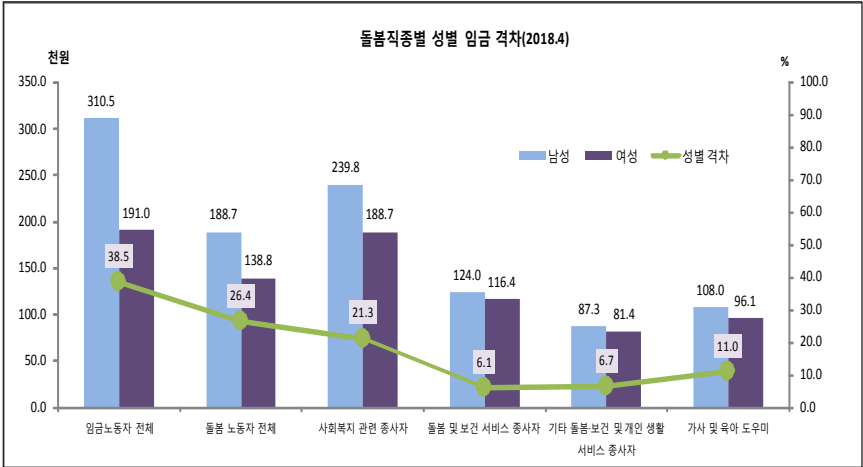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4월 기준) 원자료

## ② 돌봄 노동자 임금

- 돌봄일자리 여성임금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138.8만원으로 남성과 임금 격차는 26.4%임.
- 돌봄 일자리 직종별 여성 월 평균 임금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188.7만원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116.4만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96.1만원,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81.4만원 순서임
- 돌봄일자리 직종별 성별 임금격차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21.3%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 11.0%,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6.7%,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6.1%가 가장 적음

[그림] 돌봄직종별 임금



주 : 지역별고용조사는 임금노동자에 대해서만 임금 조사

자료 : 통계청,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4월 기준) 원자료

- 돌봄일자리내 성별 임금 격차는 30% 미만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가 30% 이상인 것에 비해 낮음. 전체 일자리 임금 보다 낮은 돌봄 일자리 임금 수준에 여초 인 것은 전체 성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의 남성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310.5만원임. 남성 노동자 임금 대비 돌봄일자리 여성 임금은 44.7%로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돌봄경제종사 여성노동자는 44.7만원을 받는 것을 의미
- 남성노동자 임금 대비 여성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돌봄경제 직종은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로 남성 노동자 임금 대비 26.2%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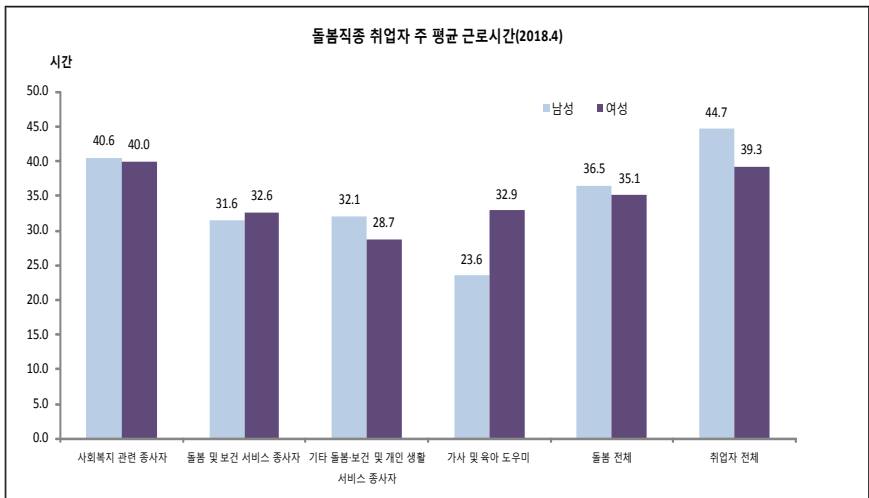
〈표〉 남성임금 대비 돌봄경제 여성노동자 임금 (단위:만원, 천원,%)

	남성 전체	여성 전체	돌봄경제 노동자 여성 임금				
			전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돌봄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	기타돌봄· 보건의개 인 생활서비스 종사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월 평균 임금	310.5	191	138.8	188.7	116.4	81.4	96.1
	100.0	61.5	44.7	60.8	37.5	26.2	31.0
시간당 임금	16,750	11,611	9,424	11,025	8,679	8,044	8,040
	100.0	69.3	56.3	65.8	51.8	48.0	48.0

③ 돌봄 취업자 노동시간

- 초과근로가 빈번한 한국노동시장에서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월 평균 임금도 많을 수 있음.
- 돌봄일자리 취업자 주 평균 근로시간은 여성이 35.1시간, 남성이 36.5시간임. 전체 취업자 근로시간은 여성 39.3시간, 남성 44.7시간임
- 직종별 근로시간은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여성 40시간, 남성 40.6시간으로 나머지 돌봄 일자리 보다 김

[그림] 돌봄직종 취업자 주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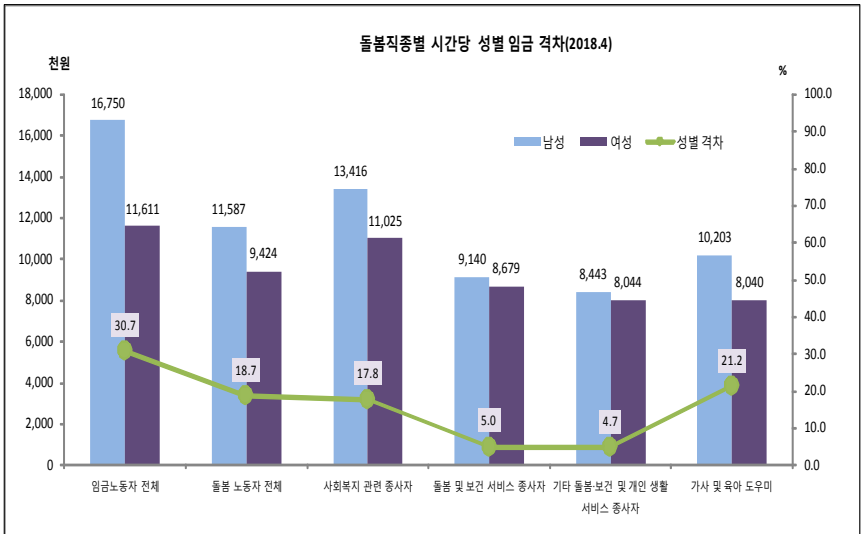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4월 기준) 원자료

④ 돌봄노동자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성별 격차는 ‘가사및육아도우미’가 21.2%로 가장 큼.
-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가장 컸던 것과 다른 결과임

[그림] 돌봄 일자리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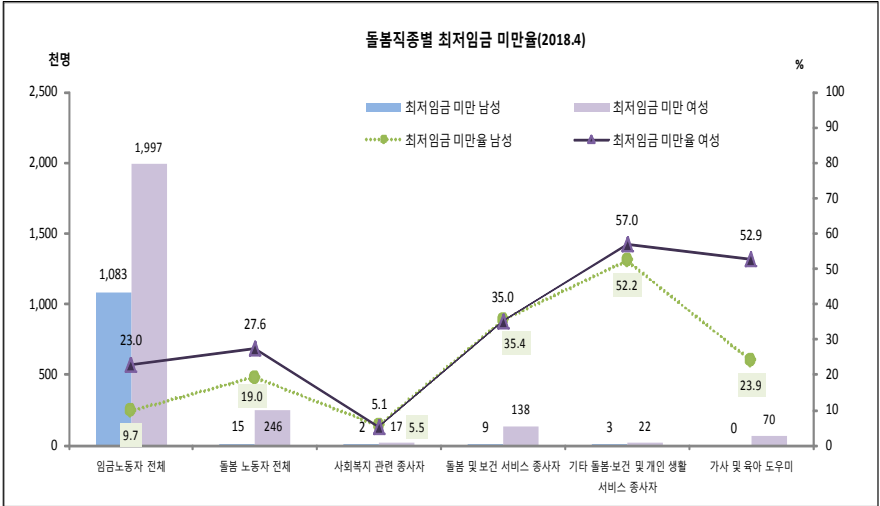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4월 기준) 원자료

⑤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미만을

-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을 받은 최저임금 미만을 계산함
- 2018년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미만율은 남성 9.7%, 여성 23%로 여성 미만율이 남성 보다 2배 이상 높음
- 돌봄 일자리 직종별 여성 최저임금 미만율은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가 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52.2%로 높음

[그림] 돌봄 일자리 최저임금 미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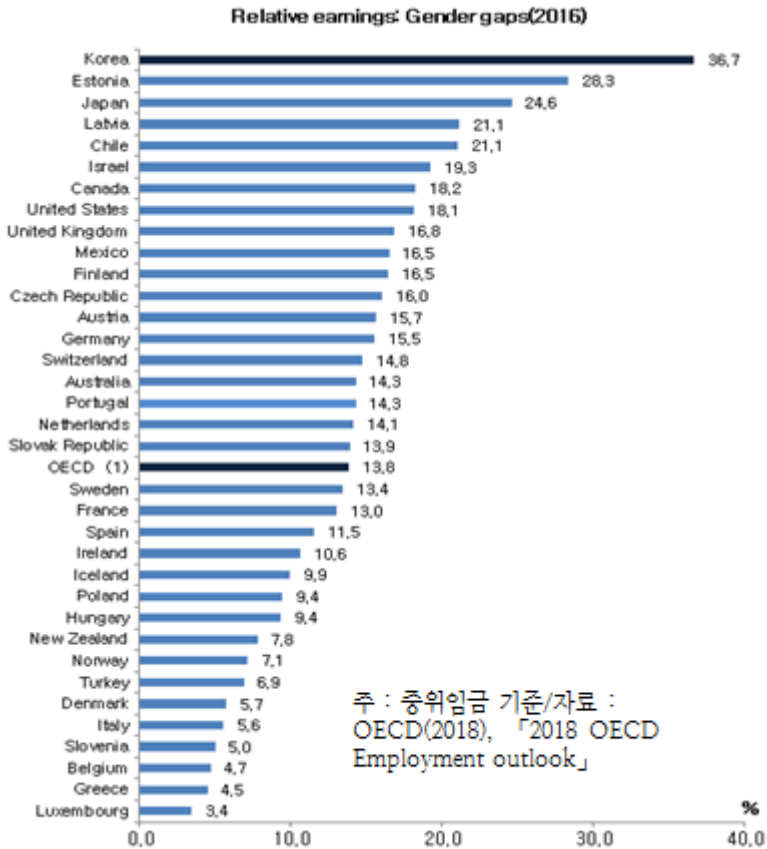
주 1. 최저임금 미만 남성 가사 및 육아도우미 156명  
 2.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자료 : 통계청,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4월 기준) 원자료

## 6) OECD 비교

### ① 성별임금격차(Gender pay gap)

- OECD가 매년 발행하는 「Employment Outlook」<sup>8)</sup>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이다. 한국은 2007년 「Employment Outlook」에서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 최초 발표부터 현재까지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 가장 큰 국가
- 2018년 OECD 발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는 36.7%로 비교국가 36개 최하위
-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30%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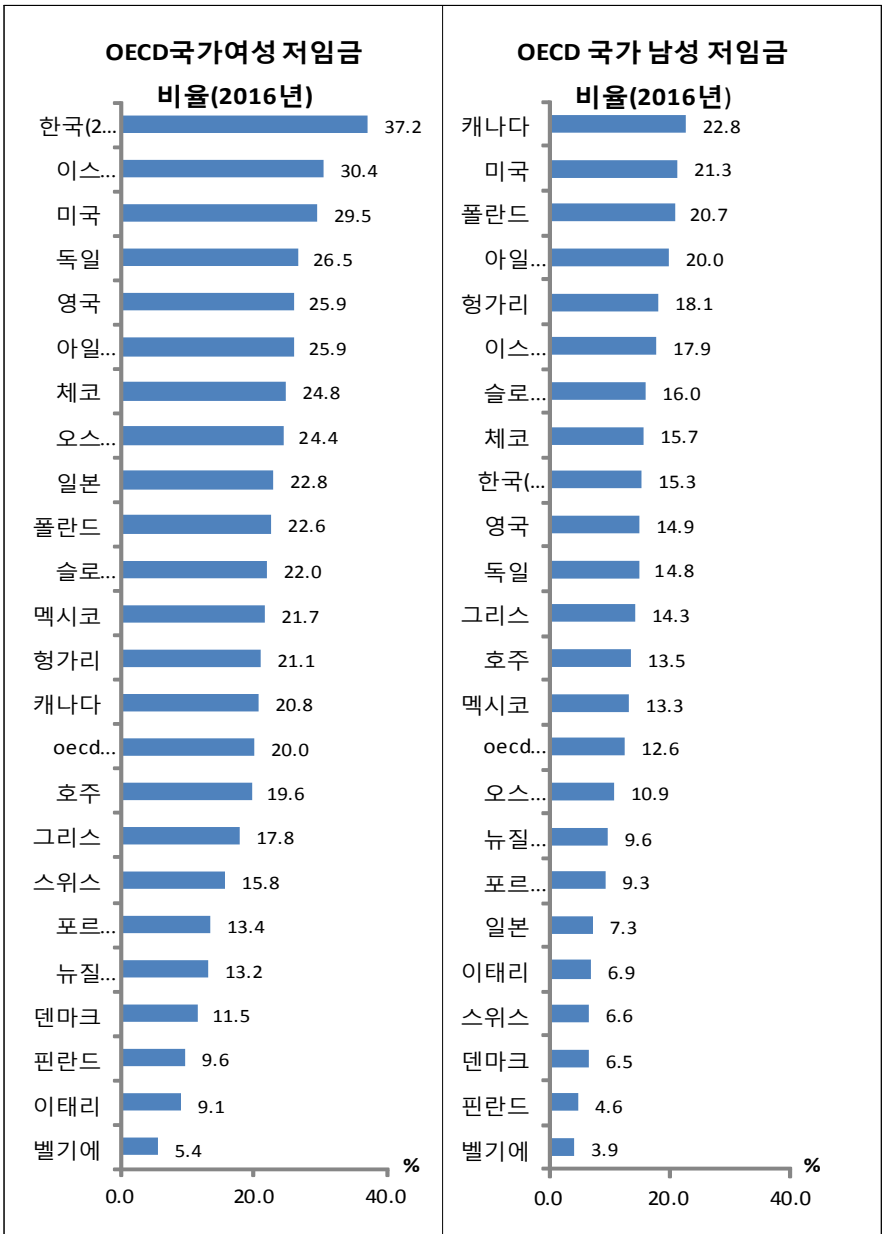
8) 「Employment Outlook」 최초 발행연도는 1989년임



② 저임금노동 비율(Incidence of Low Pay)

- 2007년 「Employment Outlook」은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 비율(Low pay)도 처음으로 발표<sup>9)</sup>
- 한국여성 저임금 노동 비율(Low pay)은 23.5%로 비교국가 23개국 가장 높음. 남성은 23개 국 중 16번째로 저임금 노동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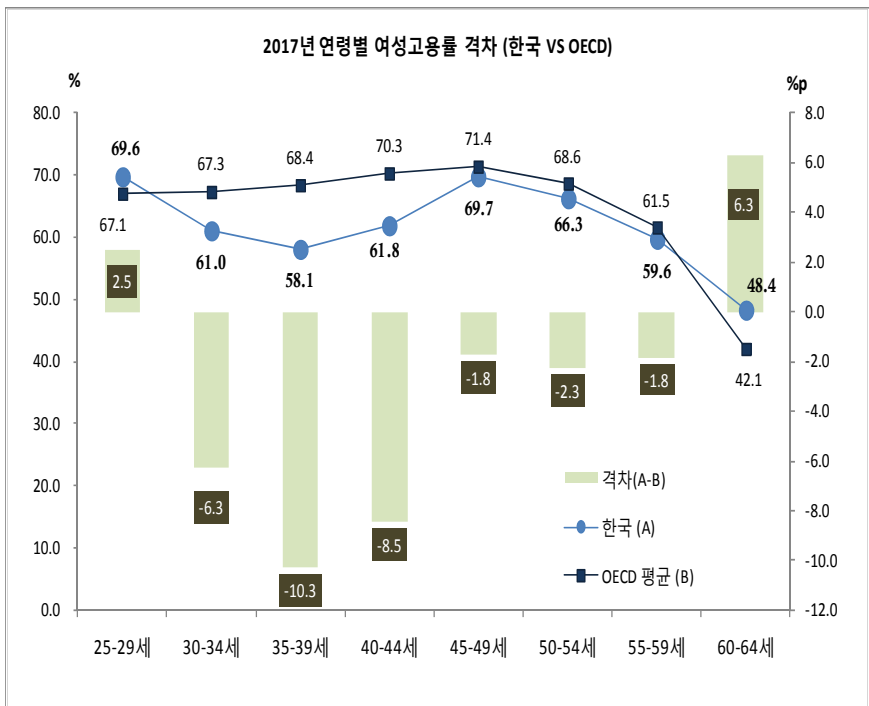
9) Employment Outlook 발행 연도와 통계 시차는 통상 2년이다. 즉, 2007년 발표된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는 2005년 통계이다. 2018년 발행된 Employment Outlook 의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 통계 시점은 2016년이다. Employment Outlook을 통해 발표된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는 2005년이 처음이지만 <https://stats.oecd.org/> 2000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 통계가 구축되어 있다.



자료 :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 Incidence of low pay

### ③ 연령별 고용률

- 한국 여성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로 인한 30대 고용률 급감 구간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임
- OECD 회원국 평균 연령별 여성고용률은 30대 고용률 급감 없이 완만히 증가함
- 한국 여성 고용률과 OECD 회원국 여성 고용률 격차는 핵심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와 40대 초반에서 큼(30~34세 6.3%p, 35~39세 10.3%p, 40~44세 8.5%p)



자료 :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Employment/population ratio 재구성

- 25~29세 구간은 한국이 OECD 평균 보다 오히려 2.5%p 높고 60~64세도 6.3%p 높음. 60대에 한국여성고용률이 OECD 평균 보다 높은 것은 25-29세에서 높은 것과 다른 차원임
- 25~29세 한국 여성고용률이 유지되어 60~64세까지 높다면 노동시장에서 이탈없이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은 결과의 고용률 유지를 의미. 한국여성은 30대 경력단절 경험 이후 40대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60대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의 노인빈곤 의미

#### 4. 여성과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란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로 흔히 여성폭력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는 강간과 같은 극단적 인권 침해 뿐 아니라 폭언, 구타, 정신적 지배 이로 인해 주체적 행위를 어렵게 하는 외부의 힘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즉 여성을 여성이기 때문에 주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힘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련의 연속성을 갖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면 대체로 강간과 같은 성폭력으로 한정시켜 협소하게 사용되면서 그 의미상의 혼란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영어로는 gender violence와 sexual violence로 표기되는 것을 우리말로는 ‘성폭력’ 한 가지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혼재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성폭력이라 하면 성기중심의 행위를 의미하는 강간에 한정되어 이해되기 때문에, 여성이 무시를 하는 것 같아서나 기분 나빠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급기야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비하, 성적 대상화를 기반으로 한다. 즉 남성보다 못한 존재라는 기본 전제 위에 오로지 여성은 남성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만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여성에게는 ‘특이’하거나 ‘여성답지 못하다’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고 이러한 존재는 남성에게 급기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일상에서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나 희롱의 소재가 되고 이에 대해 여성이 불쾌감을 표현하면 까칠하거나 예민하다는 딱지가 붙어버린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폭력적 상황은 무시당하거나 축소당하여 문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이기 때문에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확인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법제화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1980년대에 아내구타 문제에 집중하는 독자적 여성운동이 등장하고 우리나라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 나누어 일컫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2017년 여성가족부와 함께 여성폭력과 관련된 안전지표를 개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통적인 유형의 여성폭력범죄 발생실태><sup>10)</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통계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된 피의자 비율인 성폭력범죄 기소율과 신고율로 나뉘는데 신고율은 증가하고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 신고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기소 가능한 사건의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율은 떨어졌지만 성폭력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 정도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구타, 강간과 같은 단순 행위만으로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미투운동 이후 통합적 법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등을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으로 분류하는데, 이도 한국형사정

---

10) <http://www.crimstats.or.kr/portal/crime/selectCrimeIssuePage.do?bbsCd=ISSUE&seq=3993>

책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이 2014년 이후 지난 5년간 약 10% 증가하고,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도 발생건수가 2011년 2,476건에서 2015년 8,86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이처럼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통념과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에 2019년 1월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체계 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발의, 통과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대체로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뿐 아니라 여성이 폭력을 당한 이유를 여성 탓으로 돌린다든지 하여 결국에는 우리사회의 성문화가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폭력의 발생 이후 처리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 세대에 걸친 성인지 관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폭력관련지표(2):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범죄 발생실태, <http://www.crimestats.or.kr/portal/crime/selectCrimeIssuePage.do?bbsCd=ISSUE&seq=3994>

### Ⅲ. 성평등운동 사전

성평등운동 사전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여성운동의 흐름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용어들과 더불어 이 운동들의 주장에 바탕이 되는 기본 개념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운동의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현실에서 사용되면서 끊임없이 그 의미가 확장하거나 축소하면서 변화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용어의 정밀정보보다는 사용하게 된 맥락을 설명하고자 했다.

#### 가스라이팅 Gas-lighting

1938년에 공연된 연극, 가스등(Gas Light)에서 유래한 말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연극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아내가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한다. 이처럼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게 되고 종국에는 자존감이 없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형태가 조명되면서 연애편계에서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친밀한 관계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 강간죄 Rape

우리 사회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강력히 반항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강간 당시의 공포감과 같은 맥

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원인제공자로 불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를 최협의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간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과 배치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는 이 조항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강간죄 조항에 성관계시 동의를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현행 형법 성범죄 조항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고친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다.

### **강남역 살인사건**

강남역 여성표적살인 또는 흔히 강남역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강남역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 7명을 지나 보내면서까지 여성을 노려서 살인한 사건이다. 이전에도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수 없이 많았지만 유독 이 사건의 추모 열기가 강했던 이유는 이 사건의 현장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강남역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공유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단지 우연히 발생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여성혐오살인’이라는 관점을 획득했다. 이에 사회에 만연한 여성 멸시와 성차별 등 ‘여성혐오’가 진짜 이유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혐오’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 젊은 여성들은 스스로를 90년대 등장했던 영페미에 비추어 ‘영영페미’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탄생한 ‘영영페미’들은 여성 관련 각종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낙태 처벌 강화 백지화, 집회에서의 혐오 발언 금지 등을 이끌어 냈고, 2017년 3월 연대체인 ‘범페미네트워크’를 발족했다.

### **검은 시위 Czarny Protest, Black Protest**

2016년 낙태의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그 허점으로

로 인해 이미 사문법화되어 있던 상황에서(낙태죄 참조) 의료법 개정령이 발표되어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여성들은 낙태수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시위에 나섰다. 당시 드레스 코드가 검정이었기 때문에 검은 시위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법 개정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전부터 여성들을 단지 출산도구로 사고하는 사회에 대한 반발이 존재한다. 한국전쟁 이후로 인구수가 필요할 때는 출산을 장려하다가 인구가 많아지면 피임을 권유하는 정부 정책에는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출산지도는 여성을 우리 사회의 시민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자궁’으로만 환원하는 사회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검은 시위는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맞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재생산권으로 확대하였다.

### **교차성 Intersectionality**

교차성 이론은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범주는 단일하지 않으며 젠더,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측면이 상호 교차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흑인페미니즘이 발전하면서 이론적으로 함께 발전한 교차성 이론은 모든 여성은 동일한 억압구조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는 백인 중심의 페미니즘을 비판했다. 여성 혹은 노동계급, 장애인 등의 범주가 과도한 일반화를 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의 차이를 지워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차성 이론은 고정적 정체성, 범주를 거부하고 그 내부의 차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각 주체들의 연대의 정치, 횡단의 정치를 주장한다.

## **그루밍 성범죄 Grooming**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 **낙태죄 Criminal Abortion**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할 경우 형법 제269조에 따라 낙태를 한 여성과 그 외의 낙태 행위를 한 이를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낙태에 대한 예외조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이를 낙태를 허용한다. 하지만 첫째 조항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셋째, 넷째의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낙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인데, 낙태 자체를 금지한다 해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낙태는 성행하게 된다. 그리고 낙태라는 말 자체가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비판지점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또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혼부라는 단어의 도입과 미혼부 책임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단계에 있으며 현실성 있는 피임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성교육이 시급함이 지적되고 있다.

### 남녀동수 Parity

남녀동수는 정치 공직 후보자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울 것을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남녀동수운동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것처럼, 정치 공직 후보자도 절반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녀동수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 수단으로 주장되었던 것은 할당제였다. 그러나 대표직의 일부만 허용하게 한 할당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왔고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월 박영선 의원이 남녀동수법을 발의하였는데,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Equal pay for equal work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에 명시되어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n employer shall provide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in the same business.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sup>12)</sup>

### **디지털성폭력(리벤지 포르노 / 몰래카메라 범죄)**

디지털성폭력은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범죄 형태로, 사이버성폭력이라고도 한다. 기술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은 연인간의 성행위를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그 유포된 영상물을 의미한다. 주로 연인간의 이별 후에 보복의 목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신상과 함께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기도 한다.

이 영역은 기술의 발달에 비해 법제도나 사회규범, 윤리의 변화속도가 느려 대표적으로 문화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다. 이를

---

12) 윤혜정(201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결의 한계 및 개선과제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23821 판결(효성사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6(1), 2014.6, 147-161 (15 pages)

보여주듯 리벤지 포르노, 몰래 카메라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은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보복하는 사람의 입장을 담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나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드러낼 수 없는 몰래 카메라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여성들의 고발과 운동을 통해 불법동영상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업체와 온라인 상에 퍼져있는 파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같은 회사임이 드러나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남성들의 비뚤어진 성문화가 폭로되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라는 명목으로 무한대로 복제되고 싼 값에 유통되는 시장구조는 피해 여성의 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남성 중심 성문화와 자본주의의 유착구조를 잘 보여주었다. 이는 웹하드 카르텔이라 불리는데 현재 웹하드 카르텔 업체와 대표는 재판 단계에 있으며 경찰에서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때는 제재 방법이 없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변명을 일삼던 국가가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고 해당 업체 대표의 악행이 폭로되고 나서야 뒤늦게 대처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백래시 Backlash**

사회·정치적 변화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기득권층의 반발 현상이자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일컫는다. 주로 진보적인 사회 변화로 인해 기득권의 영향력 및 권력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백인 차별주의자들의 반발은 화이트 백래시(white backlash)라고 불렸으며, 2016년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화이트 백래시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발은 늘어났으나 이

를 경험하는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식은 낮은 상태라 미투를 선언한 이들이나 페미니스트에게 가해지는 공격인 ‘백래쉬’(backlash)는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로 여성혐오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 무고죄 Calumny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해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범죄 고발이 늘어나면서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경우는 ‘성폭력 허위신고’라고 인지하는 경우여야 하나 최근에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일종의 반발 혹은 반격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이러한 경우를 성폭력사건에 대한 역고소라고 한다. 하지만 성폭력 허위신고에 대한 경계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와 이에 대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제3자의 동조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허위신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어느 정도가 허위신고, 즉 소위 말하는 ‘꽃뱀’ 사건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의 상황은 심리적 반발인 경우이거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온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한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최근에는 성폭력 사건의 조력자들까지 광범위하게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몰아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닫게 하고 있다. 여기에 법조

시장에서 성폭력 무고를 담당하는 변호사까지 등장하여 법적, 윤리적 판단의 영역이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다행히 최근 대검찰청이 그간의 여성운동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였다.

###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은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다. 시청각 미디어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해와 해석 능력이 중요했지만,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는 참여적, 비판적 능력이 반영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요구된다. 또한 SNS가 다양화, 활성화되어 고전적 매체를 대체하고 여성혐오 표현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를 생산, 유통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

### **#미투운동 #Me Too**

MeToo운동(미투 운동, 미투 캠페인)은 미국의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로부터 2017년 재차 제안되어 범국가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이다. SNS의 해시태그를 통해 #MeToo(metoo), #WithYou(withyou) 등을 달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고발하고 피해자와 연대한다. 미투는 ‘나도 당했다’가 아닌, ‘나도 말한다’, ‘나도 고발한다’는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 검찰청 내 성범죄 및 성폭력 폭로로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으로

이어지며 미투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1년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형에 처해졌고,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 **성별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s**

어떤 행동이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남녀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는 그 행동을 남성적이거나 여성적 행동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성별고정관념에 기반을 두어 역할이나 해야 할 일도 구분된다고 여기는 신념체계를 형성하며 소년, 소녀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향후 남녀 모두의 교육적 직업적 경험도 한정시키고 여성에 대한 편견, 규범, 가치, 태도를 뿌리 깊게 형성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관으로써의 성별고정관념은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성차별적 태도와 남녀 간의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정당화한다.

###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이 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성별 분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 성찰하는 태도를 뜻한다.

## 성인지 예산제도<sup>13)</sup> Gender Budgeting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기획재정부, 2017).

성인지예산제도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나 UN Women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추적인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IMF에서는 특히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각 국가의 GDP 증가, 경제의 다변화, 소득불평등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을 통해 재정정책과 예산과 관련된 결정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예산결정과정에서 성평등 이슈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며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성평등 관련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 및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IMF, 2017).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서

---

13) 이종오 외(2018), 「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성인지적 성과 평가와 대안모색」, 더불어민주당  
정가원 외(2015), 「2017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제출 조항이 마련되었고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성인지에 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성적 자기결정권 Sexual Autonomy**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의미하고, 성적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상대방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성적 침해 행위를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성폭력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이다. 이전의 성폭력 관련 담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정조에 대한 죄'였다. 이것은 여성의 몸이 남성중심의 혈통을 보존하는 도구이며 정조는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주요 내용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운동의 과정에서 법제화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용어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은 개인 대 개인의 평등한 구도가 아닌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므로 불평등한 관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동의 여부만을 침해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2차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

### **성정체성 Sexual Identity**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깊이 느끼는 젠더 경험이다. 신체에 대한 개인의 인식(자유롭게 선택된다면 의료적, 외과적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신체적 외양이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과 옷입기, 말하기 등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비롯하여 기타의 성(gender) 표현이 출생에서 부여된 성(sex)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정치·경제·사회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실행·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데 있다. 성 주류화의 과정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젠더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perspective),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을 포함한다.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별영향평가 등을 성주류화의 도구라고 한다.

## **성차별과 성평등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보통 성차별을 정의할 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1부 제1조의 내용을 인용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직접차별에 비해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으로 인해 생겨나는 차별을 간접차별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로, 성차별을 타파하고 성평등을 누릴 주체는 모든 인간존재라는 점이다. 유엔인권협약이 보편적 인권선언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으로 확대되어 온 역사를 떠올린다면, 인권의 개념이 모든 인간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은 이러한 직, 간접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타의 모든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와 인간적 권리를 누리며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과 정책의 제정,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편견, 관습, 고정관념에 근거한 모든 사람의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성평등헌법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으로, 일반적 평등 원칙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보장하는 형식을 갖춘다. 프랑스 헌법 1조 2항(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과 임명직,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과 독일 헌법3조 2항(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7년, 30년 만에 이루어진 국회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현존하는 불이익 개선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와, 고용·노동·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보장 명시, 남녀 동등한 정치 참여, 국가의 출산·양육 지원 의무, 일·생활 양립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평등 헌법으로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sup>14)</sup>

### 섹스 Sex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식기 모양으로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이 남녀의 기질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성차별의 근거로 작동한다. 또한

---

1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PP.60-65.

생물학적 성이 마치 남녀로 구성된 양성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의학계에서 꾸준히 보고되는 간성(間性)의 존재는 인간의 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 **섹슈얼리티 Sexuality**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 성적 욕망,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성과 관련한 많은 것을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로 우리말로 성애라고 옮기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성적 실천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것은 한 사회가 용인하는 규범의 문제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섹슈얼리티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자 정치적인 문제이다. 성적 이중 잣대가 팽배한 사회에서 평등한 섹슈얼리티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한 성의 욕망이 다른 성의 욕망보다 우선시되면 다른 성은 성적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뿐이고 이는 다른 성을 가진 인간을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 시민권과 연관되는 인권의 문제이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과 사회화 과정에서 구성되는 성이 섹슈얼리티 구성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비대칭적인 섹슈얼리티의 경험 혹은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은 다시 젠더 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는 인간존재를 이루는 통합적인 부분으로 사유해야 한다.

## **#스쿨미투 #School Me Too**

스쿨미투는 SNS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성희롱 등 인권 침해를 제보, 폭로하는 운동이다. 스쿨미투의 가해자는 주로 학교의 교사들로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여학생에 대한 성적 비하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 2018년 9월 충북여중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만에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져 이른바 스쿨미투 현상이 이루어졌다. 스쿨미투는 단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뿐 아니라 스쿨 미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있어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들의 대응은 가해 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참여학생 색출들을 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 **여성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임파워먼트는 역량강화, 힘기르기, 권한부여 등 다양한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정치적 세력이 부족한 여성 또는 소수집단이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을 증진,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정치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지원하는 과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사회적 조건에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까지를 의미한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집단적, 구조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데, 여성주의에서는 세 가지 수준의 통합적 접근을 주장하며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여성의 행위성과 세력화를 강조한다.

## **여성친화도시<sup>15)</sup> Gender Equality Region**

2000년대 후반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에 “2009년 익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는 사업시행은 2009년부터, 근거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고 5년 경과 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2개 도시에서 2018년

---

15) 조선주 외(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7개 도시로 지정·확대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혐오 Misogyny

여성 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미워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 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성을 일반화하고 대상화하는 일체의 타자화, 배제, 차별을 의미한다. 여성혐오가 유지되는 구조는 강한 남성성과 약한 여성성을 기본으로 강하지 못한 남성과 약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배제를 포함한다. 즉 원래는 강한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부장제 사회의 기본 문법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뜻하는 폭넓은 말인데 영어의 미소지니를 우리 말로 여성 혐오로 옮기면서 의미의 혼란이 생겨났다. 따라서 미소지니는 남성에 비해 약한 존재로 상정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기본이지만 순종적이거나 여성적이지 않은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 강하지 못한 남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또한 담고 있다. 미소지니는 대부분 남성들에게서 나타나지만, 남성중심의 사회규범을 내면화한 여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여성인권선언으로도 알려진 유엔여성차별협약의 정식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이며 1981년 9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7일 89번째로 서명하였으며, 북한은 2001년 2월에 가입했다. 협약 당사국은 입법, 행정조치, 정부정책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의무를 가지며,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국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

재생산권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검은 시위와 더불어 공론화된 것으로 평생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의 요소로서의 생식 및 성의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결혼을 할 것인지, 가족을 형성할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권리 뿐 아니라 출산은 언제쯤 하고 자녀의 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그 터울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자발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와 수단을 가질 권리 역시 포함된다. 결국에는 성에 관한 기본적인 차별이 없어야 각 개인은 성을 둘러싼 모든 생활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권은 남녀의 평등과 형평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며 사생활 보호, 성폭력과 성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성 및 출산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도 연결된다.

##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누적된 차별 또는 구조적 차별 때문에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차별의 결과로 나타나는 통계적 불균형을

지표로 삼으며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교정해 나가는 제도이다.

## **젠더 Gender**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우리말로 옮기자면 성차나 성차로 인한 차별 혹은 이러한 차별이 작동하는 사회구조 전체를 뜻한다. 무엇보다 젠더는 섹스가 마치 자연적인 영역이라 변화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것을 비판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시대적, 사회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밝혀 성차는 가변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문화적 성이라고 한다. 한 사회의 남자다움, 여자다움은 사회규범의 형태로 개인에게 젠더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체로 강한 남성, 약한 여성의 공식이 통용되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경험적 수준에서는 이 공식이 깨지고 있으나 기존과는 다른 젠더 수행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규범과 구조의 수준은 여전하기 때문에 젠더를 둘러싼 균열과 잡음이 증가하고 있다.

## **젠더에 기반한 폭력 Gender-Based Violence**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대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VAW: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통합, 자유, 안전, 평등의 관점을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천명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의 위반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임을 명시하였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한 폭력은 여성이거나 남자, 여자, 남자 또는 소년과 관련된 성 역할에 대한 해로운 사회적 문화적 기대감에 의해 지속된다. 그것은 성 불평등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은 그

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치 있고 자신의 삶과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이는 그들의 건강, 고용, 사회 및 정치 생활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젠더기반폭력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의 의미를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친고죄 Antragsdelikt**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강간죄는 2013년까지 친고죄였다. 하지만 주로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여타의 관계 때문에 고소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여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가해자의 잘못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처벌되지 않으면 2차 가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하게 되었다.

### **탈코르셋 脫corset**

탈코르셋 운동이란 벗어나자는 뜻의 '탈'(脫)과 여성 억압의 상징 '코르셋'(corset·체형 보정 속옷)을 결합한 말로 '꾸밈 노동'으로 상징되는 여성 억압적 문화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예뻐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남성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여성들은 본인들을 치장하며 시간과 돈을 들여 노력해왔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각종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며 변화가 생겼다. 이제 여성들은 사회에서 규정한 '여성스럽고 예쁜' 모습에서 벗어나 외모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외치고 있다. 탈코르셋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한 외적 기준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로, 짙은 화장이나 긴 생

머리, 과도한 다이어트 등을 거부하는 행위로 소셜미디어(SNS) 등에 ‘탈코르셋’을 해시태그(#)로 한 뒤 부러뜨린 립스틱, 짧게 자른 머리 카락, 노메이크업에 안경을 착용한 인증샷들을 올리는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 # 페이미투 #Pay Me Too

남녀임금격차를 지적하는 미투운동으로 2018년 4월 영국 노동당 의원들이 시작했다. 이 운동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남녀임금격차가 있을 경우 여성들에게 남녀임금격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5월 한국이 OECD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36.7%로 가장 큰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임금차별은 불법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혜화역 시위

주로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열려 ‘혜화역 시위’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5차 집회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이다. 여성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이른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때문이었다. 명칭 그대로 시위에선 불법촬영과 수사당국·사법부를 규탄하였다. 2018년 5월에 처음 시작된 ‘혜화역 시위’는 ‘여성 단일 의제로는 사상 최대 규모 집회’로 총 6차례 열렸으며,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빨간 옷과 가방·마스크·선글라스 등 차림으로 “남성무죄 여성유죄”, “동일범죄 동일처벌”,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등 구호를 외쳤으며 기존의 단체나 조직체에서 이끄는 집회가 아니라 20, 30대 익명의 개인들이 모여서 스태프와 참여자로서 자유롭게 참여해 새로운 방식의 민주적인 집회를 만들어 낸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된다.

## 도움이 되는 책들

- 『교차성X페미니즘』, 김보명 외, 여이연, 2018
- 『그것은 썸도 테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로빈 월쇼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옮김, 일다, 2015
- 『나쁜 페미니스트』, 록산 게이, 사이행성, 2016
-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리베카 솔닛, 창작과비평사, 2015
-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은수연 지음, 이매진, 2012
-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페미니스트 크리티크』, 김은실 엮음, 휴머니스트, 2018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벨 훅스, 문학동네, 2017
-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 나오미 울프, 김영사, 2016
- 『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드루드 달레롭, 현암사, 2018
- 『배틀그라운드-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성과재생산포럼, 후마니타스, 2018
-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조앤 스콧, 인간사랑, 2009
- 『아주 친밀한 폭력- 여성주의와 가정폭력』, 정희진 지음, 교양인, 2016
-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외, 교양인, 2016
- 『여성학: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이재경 외 지음, 미래인, 2007
-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치즈코, 은행나무, 2012
-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수전 브라운 밀러 지음, 박소영 옮김, 오월의 봄, 2018.
-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카트리네 마르살, 부키, 2017
- 『젠더와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편, 동녘, 2014
- 『페미니스트 모먼트』, 권김현영 외, 그린비, 2017
-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교양인, 2013
-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외 지음, 교양인, 2018.

- ㄱ 가스라이팅 Gas-lighting  
강간죄 Rape  
강남역 살인사건  
검은시위 Czarny Protest, Black Protest  
교차성 Intersectionality  
그루밍 성범죄 Grooming
- ㄴ 낙태죄 Criminal Abortion  
남녀동수 Parity
- ㄷ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Equal pay for equal work  
디지털성폭력(리벤지 포르노 / 몰래카메라 범죄)
- ㅂ 백래시 Backlash
- ㅅ 무고죄 Calumny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미투운동 #Me Too
- ㅇ 성별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s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성인지 예산제도 Gender Budgeting  
성적 자기결정권 Sexual Autonomy  
성정체성 Sexual Identity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성차별과 성평등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성평등헌법  
섹스 Sex  
섹슈얼리티 Sexuality  
#스쿨미투 #School Me Too
- ㅋ 여성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여성친화도시 Gender Equality Region  
여성혐오 Misogyny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ㆁ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젠더 Gender  
젠더에 기반한 폭력 Gender-Based Violence
- ㄷ 친고죄 Antragsdelikt
- ㅌ 탈코르셋 脫corset
- ㅍ #페이미투 #Pay Me Too
- ㅎ 해화역 시위

[참고문헌]

김둘순·최유진·송효진·이선민(2014),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필화·김효정·마정윤(2015), 「여성주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시론」, 여성학논집 제32집 1호, pp.189-230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2015),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요그야카르타원칙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Concepts and Definitions,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concepts-and-definitions>

## 한국YWCA 성평등운동

---

펴낸곳 (사)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집필진 김은경 위원장, 김난주 위원, 마정윤 위원, 오영란 위원

기획·편집 김은경 위원장, 김난주 위원, 마정윤 위원, 오영란 위원, 전현숙 위원

편집실무 이주영, 이희정

발행일 2019년 2월 27일